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69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accounting policy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이기정/이소미



2023.12.

연구기관 : 신우회계법인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69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accounting policy of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이기정/이소미

2023. 12.

연구기관 : 신우회계법인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훈령) 개정을 위한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 신우회계법인  
총괄책임자 : 이기정 회계사  
참여연구원 : 이소미 회계사

# 목 차

요 약 문 .....	1
제 1 장 서 론 .....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7
제 2 장 지침의 개정사항 검토 .....	8
제1절 개요 .....	8
제2절 수요조사 결과 .....	12
제3절 수요조사 검토 .....	16
제4절 현행화 사항 검토 .....	20
제5절 기타사항 검토 .....	25
제6절 전문연구반 논의사항 .....	31
제 3 장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	34
제 4 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	44
제 5 장 상향입법 검토 .....	46
제1절 필요성 검토 .....	46
제2절 상향 입법(안) .....	47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48
참고문헌 .....	50
부록 .....	52

## 표 목 차

<표 2-1> 지침의 연혁 .....	8
<표 2-2> 삼일회계법인 연구결과 요약 .....	11
<표 2-3> 개정 수요조사 결과 .....	13
<표 2-4> 개정 수요조사 검토결과 .....	18
<표 2-5> 지침 개정(안) 제1조 .....	19
<표 2-6> 지침 해설서 부록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개정(안) .....	20
<표 2-7> 재무상태표_순확정급여자산(부채) 표시 .....	21
<표 2-8> 지침 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22
<표 2-9> 재무상태표_사용권자산 표시 .....	22
<표 2-10> 지침 개정(안) 제12조 .....	23
<표 2-11> 지침 개정(안) 제10조 .....	24
<표 2-12> 재무상태표_교환설비 표시 .....	24
<표 2-13> 지침 개정(안) 제6조 .....	26
<표 2-14> 지침 개정(안) 제16조 .....	27
<표 2-15> 지침 개정(안) 제7조 .....	27
<표 2-16> 지침 개정(안) 제12조 .....	28
<표 2-17> 개정수요에 대한 연구반 논의사항 .....	32
<표 2-18> 지침 신규대조표 .....	35
<표 5-1>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 개정(안) .....	47

# 요 약 문

## 1. 제 목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설정, 방송평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및 방송산업실태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고 있다. 재산상황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훈령,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기본으로 작성하지만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sup>1)</sup>”라 한다) 및 일반기업회계기준<sup>2)</sup> 등(이하 “기업회계기준<sup>3)</sup>”이라 한다)을 통해 작성하게 된다. 이는 지침 제3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도 기업회계기준이 변동되는 경우 지침에서 해당 변동 사항을 수용할지 아니면 별도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재산상황의 작성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2012년 지침이 전면 개정된 이후 소폭의 개정을 거쳐왔으나 기업회계기준은

- 
- 1)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외부 감사대상 주식회사에서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회계처리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한국회계기준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이 있음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지침에서 반영할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이면서 통신사업 및 IPTV사업도 겸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별도 작성하는 회계자료가 존재하므로 각 회계자료간 정합성 및 작성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재산상황은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향후 방송법 적용을 받을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해당 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상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게 재산상황 작성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방송법은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에게 매년 재산상황을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상황을 공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재산상황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 제출서류, 증빙자료, 공표시기에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재산상황 작성 기준을 지침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지침의 개정사항 검토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을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및 지침의 상향입법 검토사항으로 구분된다.



첫째, 지침의 개정사항은 즉시 개정사항 및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된다. 즉시 개정을 위해서는 지침에 대한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정 수요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개정수요가 없더라도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발굴한다. 다만,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액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준이 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매출액 검증 방안을 단기부터 장기까지 단계별로 제시한다.

셋째, 지침을 고시로 상향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향입법을 위한 법적체계 및 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해설서”, 지침 개정에 따른 “신규대조표”, “개정(안) 전문”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외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규제 현황을 제공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지침 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액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지침의 상향입법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침 개정사항은 즉시 개정할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다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업자별 이해관계자의 개정수요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방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연구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지침의 즉시 개정사항으로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행화 여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계정 간소화, 사업자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방송정책 상 활용도가 낮은 계정이나 서식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방송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정은 신설하고 세분화하여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중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근거 미비 및 향후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로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모바일앱매출액이 방송사업매출액인지 여부 및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거래 규모 파악을 위한 계정 신설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침 개정 사항 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침의 상향입법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훈령 수준의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산상황의 법적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지침의 즉시 개정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침 개정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제안하여 지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침의 상향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지침이 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할지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에게 재산상황 작성 시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재산상황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증진한다. 또한,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서식 및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송정책에 필요한 계정은 신설하여 재산상황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액의 신뢰도를 제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침의 상향입법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여 재산상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에 따라 매년 3월 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로 하여금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6월말에 공표하고 있다. 재산상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일반적인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상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기본으로 작성하지만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지침에서 해당 변동 사항을 수용할지 아니면 별도 기준을 제시할지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침은 2012년 한차례 전면 개정작업이 시행된 이후로 소폭의 개정이 진행된 바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지침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업자간 합병 등 조직변경 시 재산상황 제출 주체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재산상황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액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송광고매출액이 적정한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재산상황은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재산상황 공표의 목적, 재산상황 제출 시 제출서류 종류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사업자 규모, 제출시기, 공표시기 및 재산상

황 미제출 및 거짓 제출시 과태료에 대한 조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해 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회계정리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시행령에서 지침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훈령 수준의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산상황의 법적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지침의 현행화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침은 2012년 전면 개정 이후 소폭의 개정작업을 거치기는 했으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별로 지침에서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재산상황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서식이나 계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자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반면, 개정수요 조사를 통해 방송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정이나 서식은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방송시장에 맞는 재산상황이 되도록 현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방송정책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예를들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인지 여부 등은 아직 정책적으로 논의중인 사항이므로 해당 회계적 이슈는 관련 법안이나 방송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을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지침을 고시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지침의 개정사항 검토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을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및 지침의 상향입법 검토사항으로 구분된다. 각 연구 내용 항목별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의 개정사항은 즉시 반영사항 및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구분된다. 즉시 개정사항을 위해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정 수요조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개정수요가 없더라도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만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다만,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을 위한 재산상황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단기적 접근방법과 중·장기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고시로 상향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향 입법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공한다.

## 제2장 지침의 개정사항 검토

### 제1절 개요

지침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2012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지침도 전면 개정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재산상황 제출 대상자로 IPTV사업자가 추가되는 등 소폭의 개정이 있었다.

<표 2-1> 지침의 연혁<sup>4)</sup>

구분	연혁	주요 내용
2008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방송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재산상황 작성 회계처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2012	전면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방송프로그램 계정 세분화 재송신매출액 계정 신설 방송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손익구조 세분화 유료방송사업자 유료VOD매출액 신설 타법 개정내용 현행화 반영
2017	개정	재산상황 제출 대상에 IPTV사업자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중 채널사용사업 겸업사업자의 홈쇼핑 방송매출 계정 신설 방송법 개정에 따른 재산상황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규정 문구 정비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2009년부터 조기 도입하는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K-IFRS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

4) 2009년, 2015년, 2022년 3차례 단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사항 존재

정됨에 따라(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7.4)<sup>5)</sup> 지침도 2012년 전면개정을 통해 오늘날 지침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2년 방송시장과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이 다르고, 지침이 2012년 전면 개정된 이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개정이 없었던 것과 달리 K-IFRS는 지속적으로 개정<sup>6)</sup>된 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침의 현행화를 위해 방송산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수요 조사를 하고, 이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즉시 개정 사항과 향후 검토 필요사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현행 방송정책상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과거 재산상황 자료를 분석하여 방송정책상 활용도가 낮은 서식 및 계정 등은 사업자의 재산상황 작성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에 앞서 재산상황과 관련된 유사 과제로는 2015년 삼일회계법인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회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결과 중에서도 본 과제에서 검토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결과는 크게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증빙자료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재산상황과 더불어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대체하여 영세사업자에게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산상황 제출 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도 기존의 모든 방송사업자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해당 제안들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미 정책에 반영된 상태이므로 본 과제에서 추가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K-IFRS는 '07.3월 로드맵 발표후 '09년 조기도입, '11년 전면적용, '13년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로 도입 마무리 단계이며, '10년 조기도입 152사에서 2012년말 총 3,156사\*로 증가하여 K-IFR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 매김하였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7.4.)

6) [http://www.kasb.or.kr/fe/accstdhsty/NR\\_list.do?bbsCd=1065](http://www.kasb.or.kr/fe/accstdhsty/NR_list.do?bbsCd=1065)

둘째, IPTV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작성하는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를 대비한 회계처리 정비의 건이다. 연구 당시 IPTV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방송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 방송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실제 방송법이 개정되어 IPTV사업자가 재산상황 제출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의 법령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없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한 IPTV사업자의 사업별 회계분리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상황을 상향입법하고 사업별 회계분리 및 회계검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별 회계분리 방법은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이하 “IPTV 회계분리기준” 이라 한다.)」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방송정책에 필요한 회계분리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IPTV 회계분리기준은 동일한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와 IPTV서비스의 서비스별 원가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방송사업자는 매체별로 정책상 필요한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에 매체별 또는 정책별로 필요한 회계분리기준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는 1채널과 수신료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2채널간 회계분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채널별 회계분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널별 회계분리기준은 수신료수익이 채널1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채널공통 원가 정보를 채널별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회계분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육방송의 경우는 교육 방송사업과 별도 수익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사업별 회계분리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자간 대가산정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예를들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매출 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분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



쇼핑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송출원가를 분리하기 위한 회계분리기준이 필요하다.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수신료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원가 및 판매 경로별 원가산정이 신뢰성 있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송사업은 방송사업자별 매체별 특성에 따라 쟁점 및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계분리 기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네트워크 망 원가만을 생각하는 IPTV 회계분리 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방송법이 개정되어 위에서 방송사업자간 각종 대가 산정 시 재산상황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 연구를 통하여 쟁점별로 필요한 합리적인 대가산정 방법 및 회계분리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회계분리기준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 마련까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표 2-2〉 삼일회계법인 연구결과 요약<sup>7)</sup>

구분	주요내용	본 과제 검토결과
증빙자료 완화	외감법상 감사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결산서로 같음	방송법에 반영된 상태
재산상황작성대상자 상향입법	재산상황 작성대상 사업자 범위 구체화 상향입법	방송법에 반영된 상태
IPTV 사업자도 재산상황공표대상자 포함시 대비	IPTV사업자도 방송사업자로 재산상황 제출의무 부여시 대비하여 관련 조문 정리	방송법에 반영된 상태
사업별 회계분리 제안	IPTV사업과 같이 재산상황도 사업별 회계분리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정	상향 입법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하되, 구체적인 회계분리 필요성, 검증필요성 및 적용대상 등 향후 상향 입법 후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하에 검토될 필요

7) 삼일회계법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회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5.12.31. 발췌요약

## 제2절 수요조사 결과

본 연구는 지침 개정을 위하여 방송산업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방송 매체별 관련 협회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정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 지침 개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료방송 관련 협회 한 곳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두 곳 그리고 재산상황 검토회계법인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정수요를 제출하였다.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A는 지침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제2항 결합판매매출액의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A는 지침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제2항 관련하여 방송사업매출액을 채널별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A와 B는 동일한 개정 수요를 제기한 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영업비용 계정 중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실시간 프로그램사용대가와 무료VOD 프로그램사용대가로 상세 구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B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명세서(별지 제5-2호 서식)을 관계회사 매출원가와 그 외 매출원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상황의 공표 대상을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폭넓게 공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재산상황검토 회계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 중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액 범위를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방송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표 2-3> 개정 수요조사 결과

구분	현행 기준	개정의견	개정사유
유료 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 A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4호 결합판매명세서 구체화	방송사업매출의 검증을 위해 별지 제4호 결합판매명세서 항목 구체화 필요
PP 관련 협회 A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 제20의 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② 사업자(단,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 한다.	채널별로 방송평가나 기금징수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이를 강제하는 부분은 개정 검토 필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나 플랫폼의 채널평가를 받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1)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 (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1)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 (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제외)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2) 무료VOD 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에서 (1)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중 무료VOD(FOD)의 경우 실시간 채널 공급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정 필요
PP 관련 협회 B	제13조 (영업비용의 분류) 제4항 제1호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13조 (영업비용의 분류) 제4항제1호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실시간 채널에 대한 콘텐츠 이용대가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와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용 콘텐츠 이용대가 (VOD

구분	현행 기준	개정 의견	개정 사유																		
	<p>말한다.</p> <p>(1)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 (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말한다.</p> <p>(1)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2) 무료VOD 프로그램 사용료 : 제1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채널중 무료VOD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프로그램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p> <p>재허가조건에 따라 '무료VOD 프로그램 사용료'지급액 규모를 공개하는 IPTV 3사의 경우 전체'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에서'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점유율이 높고, 최근 3급증하고 있어 투명한 회계정보 공개 필요</p>																		
	<p>별지 제5-2호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432 1308 692 1568"> <tr> <td data-bbox="432 1308 480 1568">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480 1308 692 1364">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r> <tr> <td data-bbox="432 1364 480 1420">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480 1364 692 1420">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r> <tr> <td data-bbox="432 1420 480 1476">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480 1420 692 1476">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td> </tr> <tr> <td data-bbox="432 1476 480 1568">재송신비용</td> <td data-bbox="480 1476 692 1568">재송신비용</td> </tr> </table>	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	재송신비용	<p>별지 제5-2호서식</p> <table border="1" data-bbox="715 1106 965 1675"> <tr> <td data-bbox="715 1106 754 1675">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754 1106 965 1319">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td> </tr> <tr> <td data-bbox="715 1319 754 1532">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754 1319 965 1532">무료VOD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td> </tr> <tr> <td data-bbox="715 1532 754 1588">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754 1532 965 1588">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td> </tr> <tr> <td data-bbox="715 1588 754 1644">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td> <td data-bbox="754 1588 965 1644">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td> </tr> <tr> <td data-bbox="715 1644 754 1675">재송신비용</td> <td data-bbox="754 1644 965 1675">재송신비용</td> </tr> </table> <p>※ 관계회사 : 유료방송사업자의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회사 관계인 사업자</p>	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	재송신비용	<p>관계회사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 공개 의무화</p> <p>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 사용사업(이하'PP') 수직계열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발생 가능성이 높음</p>
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	재송신비용																				
③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프로그램 사용료 가.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나. 非 관계회사에 지급한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	재송신비용																				

구분	현행 기준	개정 의견	개정 사유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기타 의견]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 데이터의 공개 범위 확대 필요함
재산 상황 검토 회계 법인	명시없음	1. OTT매출액 구분: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으로 표기 필요 2. PP사업자 I/S 상 홈쇼핑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 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분리	동일 방송콘텐츠 판매 수익이므로 포함되어야 하며 홈쇼핑매출액 구체화 필요
한국 방송 통신 진과 진흥원	제12조 제4항 제7호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제4항 제7호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상품의 주문에 있어 주문이나 결제수단의 종류나 유형에 관계없이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 등으로 구분한다.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있어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방송을 통한 청약의 유인과 이에 따른 고객의 주문과 승낙으로 완성되지만, 방송을 통한 주문과 승낙이 있어 방송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방송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방송으로 청약의 유인을 한 대상상품의 판매액은 그 계약 체결 수단 또는 대금 결제 수단의 유형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상품 등 매출액으로서 홈쇼핑방송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볼 수 있음

※ 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재경팀, 홈쇼핑방송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협회는 '의견없음'으로 회신, 유료방송사업자관련협회B 및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별도 회신없음

## 제3절 수요조사 검토

### 1. 개정수요 검토 결과

방송산업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지침의 개정 수요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A에서 제출한 결합판매매출액 분류 관련 상세 작성지침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결합판매매출액 서식 자체가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서식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현행 자료는 방송사업자의 협조에 의지하고 있는 수준이다보니 자료를 제출하는 방송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 지침상 결합판매매출액은 결합상품별로 매출액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방송정책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금지 규정이나 강제 이행 규정이 없다보니 상품별 회계정보를 분리하도록 지도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와 같이 방송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상세한 작성지침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할 것을 안으로 제안한다.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A가 제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채널별 방송사업 매출액 구분 규정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재산상황을 분석한 결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업자들도 채널별 방송사업 매출액을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채널별 회계분리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널별 매출액 정보도 실효성이 없는 기준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한다.

셋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A와 B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실시간 사용료와 무료VOD 사용료로 구분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수요를 수용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현행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향후 실시간 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사용료로 상세 구분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대가산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B가 제출한 유료방송사업자의 별지 서식 제5-2호 방송프로그램매출원가 자료를 관계회사 금액과 그 외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청한 의견은 이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명세서(별지서식 제3호)에서 특수관계자매출액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의 관계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명세서를 이용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B가 제기한 기타 재산상황 공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여섯째, 재산상황 검토 회계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액은 방송프로그램을 누구에게 팔았는지가 아닌 해당 매출이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한 거래라는 실질이 동일하므로 방송사업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다. 이에, 지침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정의에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 콘텐츠도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일곱째, 재산상황 검토 회계법인의 의견인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 앱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상세 구분하자는 안을 수용한다. 홈쇼핑방송사업의 모바일 앱매출액이 방송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아직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행대로 기타사업매출액으로 분류하되,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모바일 앱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시한 홈쇼핑방송사업매출액을 결제수단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방송매출액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한다. 해당 개정은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면

이 있으나 방송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방송환경 변화로 인하여 계속해서 방송사업의 범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모바일앱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인지 부가통신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 등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다만, 해설서를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모바일앱매출액의 경우 현행 기타사업매출액이 방송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향후에는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표 2-4> 개정 수요조사 검토 결과

구분	개정의견	검토 결과
유료방송사업자 관련협회A	제15조 결합판매매출액 분류 규정 상세 작성 지침 마련 필요	해당 조문 및 서식 삭제
PP관련 협회A	PP사업자 방송채널별 매출액 구분 면제	해당 조문 삭제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프로그램사 용료를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 필요	해당 조문 및 서식 개정
PP 관련 협회 B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프로그램사 용료를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 필요	해당 조문 및 서식 개정
	제5-2 호 서식에서 방송프로그램사용료를 관계회사 매입분 별도 표시하여 공개 필요	대체 인정
	기타 재산상황의 공표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	본 연구의 검토대상 제외
재산상황 검토 회계법인	OTT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 판매액도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표기	해당 조문 및 서식 개정
	PP사업자 I/S 상 홈쇼핑기타사업매출액 을 모바일 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분리	해당 조문 및 서식 개정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주문이나 결제수단의 종류나 유형에 관계없이 방송사업 매출액 으로 구분	향후 검토

## 2. 전문연구반 논의사항

방송산업 주요 이해관계자의 개정 수요에 대한 본 연구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학계·산업계·법률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연구반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A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련 협회 A와 B의 개정 수요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둘째, 재산상황 검토 회계법인의 개정수요 검토 결과 중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건에 대하여는 본 지침의 작성 목적이 방송정책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는 것을 명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침의 제1조(목적)을 추가로 개정하고 재산상황 검토회계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 외에도 해당 안건 관련하여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매출액이 방송사업매출액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해당 계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계정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기준과 관련이 없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홈쇼핑방송사업자 관련 개정수요에 대한 논의는 현행과 같이 기타사업매출로 하되 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앱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으로 상세 구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2-5> 지침 개정(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u>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등 사업자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방송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u>

## 제4절 현행화 사항 검토

지침의 현행화를 위해 지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과 전기통신회계처리기준<sup>8)</sup> 및 IPTV 회계처리기준<sup>9)</sup>의 개정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지침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IPTV 회계분리기준은 방송사업자 중 통신사업 및 IPTV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을 검토 후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기준 및 IPTV 회계분리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년 지침 개정 이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은 크게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 순확정급여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 계정이 신설되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면서 사업자들이 기존에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부 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자산 및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현행 지침은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침의 해설서 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속 중인 임직원이 미래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정치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 자산 등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IFRS를 적용하는 사업자들이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순확정급여자산의 경우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오히려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상황에서 퇴직급여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을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퇴직급여 관련 자료는 기타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일원화 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침의 해설서에서 계정의 설명 및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8)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1호, 2020.3.11. 일부개정)

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타법개정)

<표 2-6> 지침 해설서 부록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5) 기타 비유동자산 :1)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이연 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금 등이 해당됨	(5) 기타 비유동자산 :1)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이연 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금, 순확적급여자산 등이 해당됨
4. 기타 고정부채 : 1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로써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사채, 장기선수수익 등이 해당	4. 기타 고정부채 : 1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로써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사채, 장기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 순확적급여부채 등이 해당

<표 2-7> 재무상태표\_순확적급여자산(부채)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자산</b>					
<b>I 유동자산</b>					
(1) 당좌자산					
1. ....					
<b>II 비유동자산</b>					
(1) 투자자산					
1. ...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1. ...					
(3) 무형자산					
1. ...					
(4) 기타 비유동자산					
<b>자산 총 계</b>					
<b>부채</b>					
<b>I 유동부채</b>					
1. ...					
<b>II 비유동부채</b>					
1. ...					
4. 기타비유동부채					
<b>부채 총 계</b>					

둘째, 사용권자산 계정이 신설되었다. 기존 리스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사용권자산이라는 새로운 계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유·무형자산과 별도로 구분하도록 변동되었다. 사업자들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미 유·무형자산과 별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작성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상황과 감사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에서도 구분하여 분리한다. 이로써, 지침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됨을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서식개정을 통해 사용권자산을 신설한다.

<표 2-8> 지침 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

<표 2-9> 재무상태표 사용권자산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자산					
II 비유동자산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3) 무형자산					
1. ...					
(4)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누계액)					
(5) 기타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셋째, 수익인식 기준이 개정되었다. K-IFRS는 기존에는 비용이 특정 수익을 위해 발생하더라도 발생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수익인식 기준 개정을 통해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익의 인식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지침에서 K-IFRS 개정사항과 달리 수익과 비용을 별도 구분하고 즉시 당해 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작성해 왔으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할 실익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는 지침 제12조(매출액의 분류)에서 본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표 2-10> 지침 개정(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u>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 및 시기는 지침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u>

다음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IPTV 회계분리기준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지침에서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침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IPTV 회계분리기준은 정책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정보 요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이 옳바르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산상황의 자산 중에 교환

설비를 추가한다. IPTV 회계분리기준 역시 현재 개정 작업 중으로 향후 교환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며, 전기통신회계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 이로써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산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작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지침은 제10조 개정 및 재무상태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2-11> 지침 개정(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생략) ② (생략) 1. 방송설비 : (생략) (신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방송설비 : (현행과 동일) 2.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표 2-12> 재무상태표\_교환설비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자산					
II 비유동자산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1. 방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교환설비					
(감가상각누계액)					
....					
(3) 무형자산					
1. ...					
(4)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누계액)					
(5)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 제5절 기타사항 검토

제2절부터 제4절까지는 지침의 개정을 위하여 개정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현행화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기타 지침 개정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조직 변경되었을 때 재산상황 제출의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과거 재산상황 자료를 분석하여 방송정책 활용성이 낮은 서식 및 계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조직변경시 회계처리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합병뿐만 아니라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TV 사업자에게 합병되는 등 방송사업자의 조직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sup>10)</sup>될수록 더욱 다양한 조직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송사업자의 조직 변경 시 재산상황 제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지침 해설서에도 다양한 조직 변경 경우별로 제출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소멸하거나 더 이상 방송사업을 하지 않는 방송사업 양도법인에게 재산상황 제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연구반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재산상황의 제출의무는 현재 제출의무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조직 변경 기준일 현재 방송사업자인지 여부 및 방송사업매출액이 재산상황을 제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즉, 조직 변경 기준일 현재 방송사업자 중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멸, 분할, 양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자는 다음 해 3월까지 재산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멸, 분할, 양도 법인에게 재산상황 서식을 모두 요청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재무제표만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한다.

---

10) 2022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401페이지 시사점(단기효과vs장기효과) OTT서비스가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중·장기적으로는 OTT서비스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경쟁압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 존재

<표 2-13> 지침 개정(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u>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u></p> <p>② <u>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u></p> <p>(신설)</p>	<p>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u>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u></p> <p>② <u>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양도)되는 방송사업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u></p> <p>③ <u>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분할(양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사업자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재산상황을 제출한다.</u></p>

## 2. 사업자 부담완화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침 개정사항은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은 권역별로 수행함에 따라, 재산상황이나 법인세비용처럼 하나의 법인별로 발생하는 회계자료 및 계정은 권역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으로도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무상태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비용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별로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인세비용의 경우에도 본점에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작성 혼란을 줄이고 사업자간 비교가능성도 제고하고자 한다.



<표 2-14> 지침 개정(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 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는 <u>본점이 작성하며</u> ,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u>협찬매출액명세서</u>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제16조(권역별 회계) 둘 이상의 방송사업 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 <u>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비용은 본점이 작성하며</u> ,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u>매출원가명세서</u>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둘째, 현행 재산상황은 재무제표와 주식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 제출된 주식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산상황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감사보고서와 차이는 원인을 소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식사항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별도로 제출되다 보니 회계법인 검토시 누락의 위험이 존재하고 작성하는 사업자도 제대로 작성했는지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비교란을 추가하여 재산상황과 감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차이 내용을 해당 계정의 비교란에 직접 기재함으로써 재산상황을 작성하는 사업자나 검토하는 회계법인 모두 보다 쉽게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15> 지침 개정(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계정의 구분) ①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계정의 구분) ①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u>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시 계정별로비교란에 차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u>

셋째, 과거 재산상황을 검토한 결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계정이 다수 발견되었다.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 홈쇼핑방송매출액, 협찬매출액 계정은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계정이므로 계정을 삭제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기타수신료매출액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는 정의를 명시한다. 이는 이미 방송사업자들이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주로 분류하고 있는 수신료 매출액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입 및 시설설치매출액과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은 모두 셋탑박스 및 모뎀과 같은 단말장치로 인한 장치비매출액으로 구분의 실익이 적어 “장치비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표 2-16> 지침 개정(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p>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 매출액, <u>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가.~다. (생략)</p> <p>라. <u>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만. <u>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2. 광고매출액 : (생략)</p>	<p>④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 매출액, <u>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가. ~다.(현행과 동일) (삭제)</p> <p>라. <u>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u></p> <p>2. 광고매출액 :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u>3. 협찬매출액</u>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u>4.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u>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u>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u>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u>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u>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u>7. 위성사용료매출액</u>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p> <p><u>8. 흡소핑방송매출액</u>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흡소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p> <p><u>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u>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u>3.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u>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u>4. 장치비매출액</u> :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u>5. 기타방송사업 매출액</u>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 3.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거래규모 파악

디지털 대전환으로 방송미디어산업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여 기존의 플랫폼위주의 방송시장이 콘텐츠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경쟁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1)</sup>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이슈&트렌드 VOL.54 기획리포트 2023년 미디어산업트렌드 변화 중 발췌

또한, 기존에 유료방송사업자만을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사업자에게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우리나라 IPTV사업자들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가입자 모집 경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매출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매출 정보 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와 IPTV사업자의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을 신설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제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는 방송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계정 역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립된 이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기타**

기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분리하여 회계기준을 제공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의 실질이 같고 방송정책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어 별도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제6절 전문연구반 논의사항

제2절부터 제5절을 통해 지침 개정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각 개정 사안별로 전문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현행화 쟁점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검토 의견대로 지침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었다.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계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은 제3절 수요조사 검토 부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용하고 즉시 반영하되, 글로벌동영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계정 신설은 향후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논의되었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모바일앱매출액에 대한 방송사업매출 포함 여부는 현행 회계처리를 유지하되, 기타사업매출을 모바일앱매출액과 그 외 매출액으로 상세 구분하자는 검토 의견에 의견이 없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사용료를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자는 검토의견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

그 밖에 방송사업자 조직변경 시 재산상황 제출 관련 개정사항은 조직변경 후 3개월내로 제출하되, 재산상황 제출 대상자를 조직 변경 시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방송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서식 및 계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개정하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다.

<표 2-17> 개정 수요에 대한 연구반 논의사항

제안내용		상세내용 (개정수요조사 반영)	연구반 논의사항
지침 현행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현행화	1. 순확정급여자산(부채) : 기타 비유동자산(부채)로 일원화 2. 사용권자산 : 수용 3. K-IFRS 제15호 등 수익 및 비용의 순액처리 및 이연 회계처리 등 이미 반영된 상태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수용 4. 교환설비 : 통신회계와 비교 가능성 제고위해 반영	K-IFRS 회계처리 반영이 이미 안정화된 상태이므로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되 재산상황에 특성에 맞게 요구하는 방향이 바람직
방송 환경 변화 반영 한 계 정 신 설	OTT 매출액 구분	OTT에 판매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으로 반영	1. 재산상황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하며 필요시 회계처리기준 목적 명시화 필요함 2. OTT매출액이 방송사업매출액인지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영향이 없어 회계적으로 별도 정의하고 있다면 이견 없음
	글로벌OTT 거래내역 구분	매출원가명세서 상 추가하여 제출토록함(거래시장 파악 목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즉시 개정보다는 검토의견 정도가 바람직
홈 쇼핑 방송 사업 자 관 련 쟁 점	홈쇼핑방송 사업자 기타사업매 출액 상세구분	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로 세분화	-
	홈쇼핑방송 사업자 방송사업매 출 범위	현재 홈쇼핑방송사업자는 모바일앱매출액 등을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결제수단의 차이일뿐 방송사업매출이라는 입장도 있어 기타사업인지 방송사업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 전까지는 현행대로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즉시 개정보다는 검토의견 정도가 바람직
P P 협회	유료방송사업자 매출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실시간채널사용료	수신료 배분갈등 해결을 위해 계정 세분화 이의없음

제안내용		상세내용 (개정수요조사 반영)	연구반 논의사항
의견	구분	와 무료VOD사용료로 구분	
조직 변경	다양한 조직변경 시 회계자료제출 조항 검토	합병 등으로 방송사업 소멸 시 소명시점까지의 방송매출 등 재산상항 제출 필요	현행대로 조직변경후 3개월 내 자료제출 요청 가능함(방송사업매출 1억원 이상 사업자)
사업자 부담 완화	정책 활용도 낮은 서식 및 계정 제거	(유료방송) MSP법인세비용은 본 점로분류	-
		(공통) 채널별매출액 자료제출 제외_채널별 매출액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공통) B/s, P/L에 비교란추가	-
		(공통) 결합판매서식 제거_상품별로 구분 불가하여 제출되고 있지 아니함	-
		(유료방송)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 홈쇼핑 방송매출액, 협찬매출 제거_재산상항 검토 결과 발생안됨	-
		(유료방송) 설치수익과 단말임대 수익 합산하여 장치비 수익 단 일화	-

그 외 전문연구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준액 검증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지침의 상향입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해당 논의내용은 각 연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 제3장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2장에서 검토한 지침의 즉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구대조표는 다음과 같으며 지침의 모든 신·구 조문을 포함한 신·구대조표 및 지침에 대한 상세 해설서는 부록으로 제공한다.

각 조항별 주요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조는 관련 법령조항을 현행화하고 본 지침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한다.

제2조는 제1조에서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이하 “사업자” 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정리한다.

제3조는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4조는 결합판매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를 삭제하고 서식번호를 현행화한다.

제5조는 조문번호를 현행화하고 채널별 매출구분 규정을 삭제한다.

제6조는 사업자 용어정리 및 재산상황 제출 사업자 기준 현행화, 존속 및 신설법인의 의무 명확히한다.

제7조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비고란 추가 및 조문번호 현행화한다.

제10조는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별도 구분 및 교환설비 신설, 조문번호 현행화한다.

제11조는 무형자산의 사용권자산 별도구분을 명시한다.

제12조는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상이한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의 정의를 명확히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협찬매출액, 위성사용료매출액, 홈쇼핑방송매출액 계정을 삭제하고 가입 및 시설설치매출액과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을 장치비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타매출액 중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도록한다.

제13조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실시간채널사용료와 무료VOD프로그램제공대가로 구분한다.



제15조는 결합판매매출액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제16조는 둘 이상의 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법인세비용은 본점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제19조는 관련법령 조문을 현행화한다.

제23조는 재검토키한을 현행화한다.

<표 2-18> 지침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등 사업자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방송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령현행화  지침 목적 명확화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의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용어정리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회계기준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체적 명시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부속명세서 종류 현행화  서식번호 현행화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삭제)	조문번호 현행화  관련 조문 삭제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용어간소화 및 대상사업자 현행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신설)</p>	<p>②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양도)되는 방송사업의 재무제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분할(양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사업자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재산상태를 제출한다.</p>	<p>용어간소화 및 대상사업자 현행화</p> <p>존속 및 신설법인의 의무 명확화</p>
<p>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p> <p>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제7조(계정의 구분) ①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u>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시 계정별로 비교란에 차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②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별 비교란 작성지침 명시</p> <p>조문번호 현행화</p>
<p>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p> <p>② (생략) 1. (생략) (신설)</p>	<p>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p> <p>②(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u>2.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 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u></p>	<p>사용권자산 분리구분 명시</p> <p>교환설비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증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4. 선로설비 : (생략)</p> <p>5. 정보처리설비 : (생략)</p> <p>6. 전원설비 : (생략)</p> <p>7. 건설중인 자산 : (생략)</p> <p>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생략)</p> <p>③ (생략)</p>	<p>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증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4. 선로설비: (현행과 동일)</p> <p>5.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으로 한다</p> <p>6. 정보처리설비: (현행과 동일)</p> <p>7. 전원설비: (현행과 동일)</p> <p>8. 건설중인 자산 : (현행과 동일)</p> <p>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조문번호 현행화</p>
<p>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4. (생략)</p>	<p>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p> <p>1. ~4. (현행과 동일)</p>	<p>사용권자산 분리구분 명시</p>
<p>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생략)</p> <p>(신설)</p> <p>②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p>	<p>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현행과 동일)</p> <p>②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 및 시기는 지침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p> <p>③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라 한다) 포함, 이</p>	<p>손익 인식원칙 명시(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 3. (생략)</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p> <p>5. (생략)</p> <p>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 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7. (생략)</p> <p>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p>	<p>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 3. (현행과 동일)</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하며 <u>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포함한다.</u></p> <p>5. (현행과 동일)</p> <p>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7. (현행과 동일)</p> <p>④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u>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가. ~ 다. (현행과 동일) (삭제)</p>	<p>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 판매콘텐츠 판매수의 포함 명시</p> <p>관련서식 삭제로 인한 조문 정리</p> <p>조문번호 현행화</p> <p>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계정 삭제</p> <p>유료방송사업자</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u>다.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2. (생략)</p> <p><u>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 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u></p> <p><u>4.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u></p> <p><u>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u></p> <p><u>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u></p> <p><u>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u></p>	<p><u>라.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u></p> <p>2. (현행과 동일) (삭제)</p> <p><u>3.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u></p> <p><u>4. 장치비매출액 :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u></p> <p>(삭제)</p>	<p>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조문번호 현행 화 및 정의 명확 화</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조문번호 현행화</p> <p>계정간소화</p> <p>계정간소화</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p> <p>8. <u>홈쇼핑방송매출액</u> :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u>홈쇼핑방송매출액</u>을 말한다.</p> <p>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④ <u>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u>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3. (생략)</p> <p>4. <u>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u>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u>매출액</u>으로 한다.</p> <p>5.~8.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5.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⑤ <u>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u>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3. (현행과 동일)</p> <p>4. <u>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u>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u>매출액</u>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 판매를 포함한다.</p> <p>5.~8. (현행과 동일)</p> <p>⑥ (생략)</p> <p>1. (현행과 동일)</p> <p>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u>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u>은 <u>모바일앱매출액</u>과 <u>기타사업매출액</u>으로 구분한다.</p>	<p>계정 삭제 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조문번호 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p>OTT제공사업자 판매 콘텐츠 판매수익 포함 명시</p> <p>조문번호 현행화</p> <p>홈쇼핑방송사업자 기타사업 계정 세분화</p>
<p>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③(생략)</p> <p>④ <u>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u></p> <p>1. (생략)</p> <p>(1) <u>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u>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p>	<p>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③(현행과 동일)</p> <p>④ <u>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u></p> <p>1. (현행과 동일)</p> <p>(1) <u>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u> : 제12조 제4항 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실시</p>	<p>계정 세분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u>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4) 재송신비용 : 제12조제2항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p> <p>2. (생략)</p> <p>⑤ ~ ⑦ (생략)</p>	<p>간 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 사용료를 말한다.</p> <p>(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4) 재송신비용 :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p> <p>2. (현행과 동일)</p> <p>⑤ ~ ⑦ (현행과 동일)</p>	<p>조문번호 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p>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 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p> <p>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 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p> <p>(삭제)</p>	<p>조문번호 삭제</p> <p>관련 서식 삭제 로 조문 삭제</p>
<p>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정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정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p>	<p>제16조(권역별 회계) 둘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정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정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p>	<p>용어정리</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항 및 변동내역, <u>경영자확인서</u>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u>결합판매명세서</u>, <u>매출원가명세서</u>, <u>협찬매출액명세서</u> 및 <u>영업통계</u>는 권역별로 제출한다.</p>	<p>및 변동내역, <u>경영자확인서</u>, <u>손익계산서</u> 상 법인세 비용은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u>매출원가명세서</u> 및 <u>영업통계</u>는 권역별로 제출한다.</p>	<p>법인세비용 작성주체 명확화 서식 현행화</p>
<p>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생략)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p>	<p>관련법령 현행화</p>
<p>제2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 7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6월 30일까지</u>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u>2024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까지</u>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재검토기한 현행화</p>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부과<sup>12)</sup>를 하고 있다. 재산상황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초자료로써 실무적으로 재산상황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재산상황을 활용하여 기금을 산정한다는 법적 근거 부족 및 회계 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재산상황의 신뢰성 저하는 재산상황을 이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인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상황만으로 부족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를 보완하기 위한 장·단기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검토 용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각 회계법인들이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매출액을 비교하고 차이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조치하는 방안이다. 재산상황은 방송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을 제출하므로 재산상황을 검토하는 회계법인은 각 방송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을 검토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검증을 하는 회계법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한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매출액을 검증하여 두 회계법인이 각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매출액을 비교함으로써 두 자료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자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자료이므로 재산상황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1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100분의 6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재산상황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스템적으로 자동 검토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 및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법령인 방송통신발전기본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를 위하여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된 법령이므로 각 부처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위한 회계기준 및 검증 기능을 각각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전문연구반에서도 단계별 접근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 제5장 상향입법 검토

### 제1절 필요성 검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에서는 재산상황의 제출 목적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는 매년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재산상황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 제출서류, 증빙자료, 공표시기에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재산상황 작성 기준이 지침이 된다는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법 시행령에 재산상황을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는 위임규정이 없었으니 재산상황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현재의 지침은 훈령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산상황을 지침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상황의 작성기준을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임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현행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안정성을 강화하여 방송정책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보다 신뢰성있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재산상황이 사업자간 대가산정 등에 활용되는 등 지금보다 더 신뢰성 있는 채널별, 서비스별 원가 정보를 요구한다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정책상 필요한 회계분리기준을 제정하고 회계분리기준대로 재산상황이 작성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상향 입법(안)

지침의 고시 상향입법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로써 방송법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재산상황 제출자료 및 시기 등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고시로 재산상황의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위임함으로써 재산상황에 대한 법적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5-1〉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생략)</p> <p>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① (현행과 동일)</p> <p>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u>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2.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지침의 상향입법 관련 전문연구반 논의사항으로는 현행 방송법 체계하에서는 본 연구 수준의 개정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회계검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은 향후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나는 부분을 현행화 하고, 방송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개정수요를 검토하여 즉시 개정할 수 있는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과거 재산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서식 및 계정은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작성 부담 완화안을 제시하였다.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개정을 통해 즉시 반영되는 사항은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기타비유동자산(부채) 계정 일원화 처리, 사용권자산의 유·무형 자산과의 계정 분리, 수익인식기준 인용 및 교환설비 계정을 신설하였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콘텐츠 대가를 포함하였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앱매출액과 그 외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 변경 사회계처리 명확화 및 소멸 시까지 방송사업매출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제출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바일 앱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보는 방안과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계정 신설이다. 두 안건 모두 현재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침 개정 사항 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산상황 자료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검증 자료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업을 위한 위탁 회계법인 선정 시부터 용역 범위에 방송광고 매출

액 비교 업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중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료를 자동 비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신뢰성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검증을 위한 회계기준 마련 및 회계자료 검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침의 상향입법 방안에 대하여는 지침을 고시로 상향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상황 작성 방법은 고시로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 재산상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재산상황이 사업자간 대가산정 등에 활용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정보와 신뢰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정책에 적합한 회계분리기준을 제정하고 회계검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삼일회계법인(2015),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회계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금융위원회(20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보도자료’
- 정훈, 권용재 (2013),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정보 연구’ 현안연구 13-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Ofcom, (2013), The BBC Commercial and Trading Activities- Requirement and Guidance (2023)
- BBC Group (202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 일본방송협회(NHK) (2023), 재무제표, 일본방송협회
- Paramount Global (2023), Paramount Global Company Presentation, 2023
- Paramount Global (2023), 10-K Annual Report, SEC Edgar.
- KISDI(2022), 202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KCA(2023), 2023년 미디어산업트렌드 변화 기획리포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웹사이트]**

<http://www.kasb.or.kr/>(최종접속일 : 2023년 12월 31일)

[http://www.kasb.or.kr/fe/accstdhsty/NR\\_list.do?bbsCd=1065](http://www.kasb.or.kr/fe/accstdhsty/NR_list.do?bbsCd=1065)(최종접속일 : 2023년 12월 31일)

[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54/index.html](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54/index.html)(최종접속일 : 2023년 12월 31일)

## 부 록

1. 신·구 대조표 전문
2.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해설서
3. 개정(안) 전문
4. 해외방송사업자 회계규제 현황

## < 부 록 1 > 신·구 대조표 전문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u>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방송시장경쟁 상황평가, 방송평가 등 사업자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방송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u>	관련 법령현행화  지침 목적 명확화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u>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u>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u>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u>	용어정리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u>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u>	기업회계기준 구체적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결합판매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협찬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재산상황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p> <p>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p>	<p>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p> <p>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p>	<p>부속명세서 종류 현행화</p> <p>서식번호 현행화</p>
<p>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p> <p>② 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법 제2조제20의2호에 따른 채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p> <p>(삭제)</p>	<p>조문번호 현행화</p> <p>관련 조문 삭제</p>
<p>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②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②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②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용어간소화 및 대 상사업자 현행화</p> <p>용어간소화 및 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의 재무제표를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신설)</p>	<p>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양도)되는 방송사업의 재무제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p> <p>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분할(양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사업자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재산상황을 제출한다.</p>	<p>상사업자 현행화</p> <p>존속 및 신설법인의 의무 명확화</p>
<p>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p> <p>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제7조(계정의 구분) ①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시 계정별로 비교란에 차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별 기보란 작성지침 명시</p> <p>조문번호 현행화</p>
<p>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 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p>	<p>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 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p>	
<p>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p>	<p>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p>	<p>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p>	
<p>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p> <p>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 광고 등의 제작 · 송출 ·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 세트 · 의상 · 미술품 ·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p> <p>(신설)</p> <p>2.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p> <p>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p>	<p>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p> <p>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 광고 등의 제작 · 송출 ·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 세트 · 의상 · 미술품 ·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p> <p><u>2.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 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u></p> <p>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 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사용권자산 분리 구분 명시</p> <p>교환설비 신설</p> <p>조문번호 현행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5.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6.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p> <p>7.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p> <p>8.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 자산으로 한다.</p> <p>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p>	<p>4. 선로설비: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5.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으로 한다</p> <p>6. 정보처리설비: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p> <p>7. 전원설비: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p> <p>8.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p> <p>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 자산으로 한다.</p> <p>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답·잡종지 등으로 한다.</p> <p>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p> <p>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갯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p> <p>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의자·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p> <p>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p> <p>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p> <p>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한다.</p>	<p>답·잡종지 등으로 한다.</p> <p>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p> <p>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갯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p> <p>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p> <p>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p> <p>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p> <p>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외 유형자산으로 한다.</p>	
<p>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p> <p>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p> <p>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으로 한다.</p> <p>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사용권자산 분리 구분 명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p> <p>나. 구입방송프로그램</p> <p>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p> <p>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p>	<p>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p> <p>나. 구입방송프로그램</p> <p>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p> <p>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p>	
<p>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p> <p>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p>	<p>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 및 시기는 지침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p> <p>③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p> <p>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p>	<p>손익 인식원칙 명시</p> <p>조문번호 현행화</p>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p> <p>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한다.</p> <p>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경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p>	<p>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p> <p>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하며 온라인 동영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포함한다.</p> <p>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경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온라인 동영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콘텐츠 판매수의 방송매출포함 명시</p> <p>관련서식 삭제로 인한 조문 정리</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③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u>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및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p> <p>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p> <p>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p> <p>라. <u>중계유선방송수신료매출액 : 방송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마.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매출액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외한 <u>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u></p>	<p>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④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u>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을 말한다.</p> <p>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p> <p>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라.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매출액 중 가목부터 <u>다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u></p>	<p>조문번호 현행화</p> <p>중계 유선 방송수신료매출액 계정 삭제</p> <p>유료 방송 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조문번호 현행화 및 정의 명확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p> <p>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4.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5.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가입비 및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6.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7. 위성사용료매출액 : 위성사용료 명목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받는 대가를 말한다.</p> <p>8. 흡소핑방송매출액 :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제4항제7호의 흡소핑방송매출액을 말한다.</p>	<p>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p> <p>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3. 흡소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흡소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p> <p>4. 장치비매출액 :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조문번호 현행화</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계정간소화</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p>유료방송사업자 발생하지 않는 계정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9.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p> <p>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p> <p>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다.</p> <p>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p>	<p>5.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p> <p>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p> <p>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p> <p>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p>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 판매를 포함한다.</p> <p>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p>	<p>조문번호 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p>온라인 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방송콘텐츠 판매수익</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p> <p>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한다.</p>	<p>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p> <p>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u>홈쇼핑 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한다.</u></p>	<p>홈쇼핑 방송사업자 기타사업매출액 계정세분화</p>
<p>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p> <p>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p>	<p>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p> <p>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을 말한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자산 상각액을 말한다.</p> <p>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한다.</p> <p>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 상여금 ·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p> <p>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으로 한다.</p> <p>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으로 한다.</p> <p>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p> <p>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p>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p>	<p>자산 상각액을 말한다.</p> <p>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한다.</p> <p>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 상여금 ·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p> <p>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p> <p>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p> <p>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p> <p>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p>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p> <p>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p> <p>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p> <p>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p> <p>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p> <p>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p> <p>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p>(1) <u>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u> : 제12조제3항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무료 VOD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포함)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p> <p>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p> <p>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p> <p>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p> <p>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p> <p>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의 제1호 가목과 같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의 제1호 나목과 같다.</p> <p>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p>(1) <u>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u> : 제12조 제4항 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사용료를 말한다.</p>	<p>개정 상세 분류</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제3항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4) 재송신비용 : 제12조제2항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p> <p>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p> <p>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인건비 :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p> <p>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p> <p>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p> <p>4. 복리후생비 :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p> <p>5. 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를 준용한다.</p>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p>	<p>(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p> <p>(4) 재송신비용 :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p> <p>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p> <p>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인건비 :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p> <p>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제2호를 준용한다.</p> <p>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p> <p>4. 복리후생비 : 제3항 제4호를 준용한다.</p> <p>5. 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를 준용한다.</p>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p>	<p>조문번호 현행화</p> <p>조문번호현행화</p> <p>조문번호 현행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호가목을 준용한다.</p> <p>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p> <p>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제6호를 준용한다.</p> <p>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p> <p>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p> <p>9. 지급수수료 : 제3항제7호를 준용한다.</p> <p>10. 지급임차료 : 제3항제8호를 준용한다.</p> <p>11. 교육훈련비 : 제3항제9호를 준용한다.</p> <p>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p> <p>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흡소핑송출수수료 : 흡소핑방송사업자가 흡소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p>	<p>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p> <p>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p> <p>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 제6호를 준용한다.</p> <p>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p> <p>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p> <p>9. 지급수수료 : 제3항 제7호를 준용한다.</p> <p>10. 지급임차료 : 제3항 제8호를 준용한다.</p> <p>11. 교육훈련비 : 제3항 제9조를 준용한다.</p> <p>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방송프로그램비용</p> <p>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p> <p>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p> <p>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흡소핑송출수수료 : 흡소핑방송사업자가 흡소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p> <p>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p>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p> <p>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p> <p>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건비 : 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li> <li>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li> <li>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제3호를 준용한다.</li> <li>4. 복리후생비 : 제5항제4호를 준용한다.</li> <li>5. 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를 준용한다.</li> </ol>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제5호가목을 준용한다.</p> <p>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나목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제6호를 준용한다.</li> <li>7. 광고선전비 : 제5항제7호를</li> </ol>	<p>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p> <p>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p> <p>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p> <p>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p> <p>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p> <p>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건비 :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li> <li>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li> <li>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 제3호를 준용한다.</li> <li>4. 복리후생비 : 제5항 제4호를 준용한다.</li> <li>5. 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를 준용한다.</li> </ol> <p>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p> <p>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 제6호를 준용한다.</li> <li>7. 광고선전비 : 제5항 제7호를</li> </ol>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p>준용한다.</p> <p>8. 지급수수료 : 제5항제9호를 준용한다.</p> <p>9. 지급임차료 : 제5항제10호를 준용한다.</p> <p>10. 교육훈련비 : 제5항제11호를 준용한다.</p> <p>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준용한다.</p> <p>8. 지급수수료 : 제5항 제9호를 준용한다.</p> <p>9. 지급임차료 : 제5항 제10호를 준용한다.</p> <p>10. 교육훈련비 : 제5항 제11조를 준용한다.</p> <p>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p>	
<p>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p> <p>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충당부채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p>	<p>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 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p> <p>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 충당부채 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p>	
<p>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①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p>	<p>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삭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p>	<p>조문번호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및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p> <p>② 결합판매매출액은 별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p> <p>(삭제)</p>	<p>관련 서식 삭제로 조문 삭제</p>
<p>제16조(권역별 회계) 2개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u>경영자확인서</u>는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u>결합판매명세서</u>, <u>매출원가명세서</u>, <u>협찬매출액명세서</u> 및 <u>영업통계</u>는 권역별로 제출한다.</p>	<p>제16조(권역별 회계) 둘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u>경영자확인서</u>, <u>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비용</u>은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u>매출원가명세서</u> 및 <u>영업통계</u>는 권역별로 제출한다.</p>	<p>용어정리</p> <p>법인세비용 작성 주체 명확화</p> <p>서식 현행화</p>
<p>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li> <li>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li> <li>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li> </ol>	<p>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li> <li>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li> <li>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li> </ol>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p> <p>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p> <p>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p>	<p>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p> <p>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p> <p>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그랩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그랩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p> <p>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p>	
<p>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p> <p>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p> <p>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p>	<p>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p> <p>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p> <p>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p>	<p>관련법령 번호 현행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현행화 재검토기한 현행화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록 2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해설서

2023.12

회계처리는 회계적인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 해설서는 방송사업자가 작성하고 있는 재산상황의 작성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다.

본 지침에 따라 작성된 재산상황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및 허가(재허가 포함) 등 다양한 방송정책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 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 1. 요지

본 조는 지침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평가 및 기금징수를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경우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정의)제3호,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제5호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 4. 재산상황 공표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6월말까지 정리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한다. ‘재산상황 공표집’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집에 단순히 수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업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종합하면 시장별로 재산상황을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방송시장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 5. 방송평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을 심사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도 심사기준의 하나이다.(방송법 제17조) 내용영역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며, 편성영역은 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과 관련된 사항이며, 운영영역은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운영영역에서 지침에 의해 작성된 회계자료가 필요하다.

#### 6. 기금징수

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는 근거 및 성격은 방송사업이란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사업권을 부여 받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즉, 기금징수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특혜적인 수익을 징수하는 것이다.

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자 특성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서비스 매출액, 결산상의 영업이익의 산정기준으로 징수한다. 방송사업자는 아니지만 인

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에게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따라 기금을 징수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 1. 요지

본 조는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회계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관행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및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는 K-IFRS 기준을, 그 외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지 않은 경우 업계에서 회계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다. 즉, 업계의 회계 관행은 방송사업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회계처리를 말한다.

## 제 2 장 재무제표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 1. 요지

본 조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 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의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 표이며,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 내용 및 상태를 표시한다. 사업자가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몫을 표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보여 주는 표이다.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본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는데 이는 별도 조항에서 설명한다.

## 3.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이다. 손익계산서는 사업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표로서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혹은 용역 제공에 의한 수입액이며, 비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소모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액이다.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본점에서 법인세비용을 기재하며 인노 별도 조항에서 설명한다.

## 4.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매출액명세서’ 부터 별지 제8호 서식 ‘경영자확인서’ 까지이다. 부속명세서는 방송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 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요지

본 조는 지침의 목적인 방송사업회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 이라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방송사업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을 기타사업매출액과 구분하여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기타사업

방송법 제2조는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사업이 기타사업이다.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들이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공익사업 등도 기타사업이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②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양도)되는 방송사업의 재무제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분할(양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재산상태를 제출한다.

##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사업의 분할(양도)시 합병기일 또는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멸회사 또는 분할(양도)법인의 재무제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합병기일과 분할(양도)기일

합병기일은 합병 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승계한 날을 말한다. 분할(양도)기일은 사업의 분할 또는 양도 시 피분할(피양도) 회사가 분할(양도)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승계한 날을 말한다.

분할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영업양도는 분할과 유사하나 주주권 및 경영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① 합병 시

사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소멸되는 방송사업자의 합병기일 시점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2	비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② 분할(양도) 시

사례	분할(양도) 법인	피분할(피양도) 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분할(양도)법인의 분할(양도)기일 시점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2	방송사업자	비방송사업자	



## 3. 합병 사례

## ① 합병법인이 합병존속법인인 경우(A+B=A)

사 례	합병 법인(A)	피합병 법인(B)	합병존속 법인(A)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합병후 B의 방송사업손익)</li> <li>· B : 합병 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li> </ul>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li> </ul>
3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합병후 B의 방송사업손익)</li> <li>· B : 합병 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li> </ul>
4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해당없음

## ② 신설합병인 경우(A+B=C)

사 례	합병 법인(A)	피합병 법인(B)	합병존속 법인(C)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amp; B :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각각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li> <li>·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li> </ul>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li> <li>·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li> </ul>
3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 합병소멸이후 3개월이내 제출 (기초~합병일까지 방송사업손익)</li> <li>· C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합병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li> </ul>

4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해당없음
---	------------	------------	------------	------

4. 분할 사례(A=A+B)

사 례	분할 법인(A)	분할존속 법인(A)	분할신설 법인(B)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 분할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분할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분할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3	방송사업자 (E방송사업+ F방송사업)	방송사업자 (E방송사업)	방송사업자 (F방송사업)	· A : 분할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분할일까지 분할 F방송사업손익)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으로써 다음해 3월 제출(분 할하지 않은 E방송사업손익 일년치)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분할일~기말까지 F방송사업손익)

5. 양도 사례

사 례	양도 법인(A)	양도 법인(A)	양수 법인(B)	재무제표제출
1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A의 일년치 방송사업손익)
2	방송사업자	비방송 사업자	방송사업자	· A :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양도일까지 방송사업손익)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양수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3	방송사업자 (A방송사업+ B방송사업)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 A :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기초~양도일까지 양도방송사업손익) · A : 기말 현재 방송사업으로써 다음해 3월 제출(양도하 지 않은 방송사업손익 일년치) · B : 기말 현재 방송사업자로서 다음해 3월 제출 (양수일~기말까지 방송사업손익)

제7조(계정의 구분) ①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시 계정별로 비교란에 차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1. 요지

본 조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계정 과목을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계정(과목)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이며, 계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을 계정과목이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함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이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상황 작성시에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하며, 회사에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한 점은 재무제표의 해당 계정과목 비교란에 내용을 기재한다.

### 3.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이다. 회사의 재무에 관한 정보를 재무상태표 등의 명세서만으로는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 필수정보가 주석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은 본 지침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석 작성 여부는 각 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제8조(선급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1. 요지

본 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의해 회계처리된 방송프로그램선급금을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일반선급금

선급금이란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매입처에게 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3.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본 지침 제17조는 사업자가 결산일 현재 제작 혹은 구매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위하여 제작 혹은 구입에 지불한 지출액을 결산일에 수정분개를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1. 요지

본 조는 재고자산을 정의하고, 재고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의 예를 열거하고, 재고자산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있다.

### 2. 재고자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산분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자산이 “유동자산인가? 혹은 비유동자산인가?” 라는 논란이 있고, 비유동자산이라면 “유형자산인가 혹은 무형자산인가?” 라는 논란이 있다. 이 지침은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쉬운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외부 감사

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외부감사인이 동의하는 경우 재고자산 처리할 수 있으나 방송법상 방송회계는 해당 지침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상황 작성시에는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음)

### 3. 협찬물품

외부의 주체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필요하여 협찬 받은 물품을 말한다.

### 4. 셋톱박스

텔레비전 세트 위에 놓고 이용하는 상자모양의 기기로 주문형 비디오(VOD), 영상판 홈쇼핑, 네트워크 게임 등 차세대 쌍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혹은 대화형 텔레비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가정용 통신 단말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하며,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광고 등의 제작·송출·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의상·미술품·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
2.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 박스 등으로 한다
6.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8.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증도금 등으로 한다.
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유형자산을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

### 2. 부속설비와 부대설비

부속설비는 주설비의 부속되는 설비를 말하며, 부대설비는 설비의 본원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를 말한다.

### 3. 교환설비

방송사업자 중에는 통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다수 있어 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의 정합성 차원에서 필요한 계정으로 교환설비란 통신설비의 호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상 브레인 기능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 4. 전송설비

전송단국장치는 단국 혹은 단말에서 다수의 신호내용을 묶는 장치이다. 중계장치는 통신시스템 중간에서 약해진 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재전송하거나, 찌그러진 신호의 파형을 정형(trimming)하여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재구성하여 송신하는 장치이다. 다중화장치는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회선 또는 전송로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독립된 다수의 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이다. 분배장치는 주파수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로 전화 음성에 사용되는 4kHz 정도의 저주파 대역의 신호와 디지털 가입자 회선 모뎀이 변조에 사용되는 고주파대역을 분리한다.

#### 5. 선로설비

케이블(cable)은 전기적/광학적 파동을 전파(도파)하는 것을 말하며, 재질, 절연형태, 외피구조, 외장중, 구조, 용도, 구간, 직경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전주(electric pole)는 가공 케이블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하며, 목주, 철근콘크리트주, 철주 등이 있다.

관로(conduit line)는 지하에 시설된 인공, 수공, 국내통신구, 국내인공 등을 상호간에 연결해주는 소규모의 보호시설을 말한다. 보통 합성수지관을 매설하여 그 내부에 통신케이블을 수용한다. 배관(piping)은 관을 밸브, 관이음 등을 이용하여 접속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관은 모든 동력 장치나 액체, 기체의 수송, 이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용도나 유체 등에 적합한 배관이 되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가스 배관, 급수 배관, 난방 배관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맨홀(manhole)은 통신케이블의 인입·접속작업,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하여 그 안에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반면

에 핸드홀(hand hole)은 소규모 지하 케이블의 설치, 철거작업 및 접속점을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되는 소규모 구조물을 말한다. 배선반(distributing board)은 외선을 옥외장치로 인입하는 곳에 설치된 설비로 외부 선로 시설과 내부 교환 시설과의 단자를 연결시킨다.

## 6. 전원설비

수변전장치는 수전장치와 변전장치를 말한다. 수전장치는 건물이나 공장에 전력을 받아들이는 장치이고, 변전장치는 전력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전력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전압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를 말한다. 정류기는 교류전력에서 직류전력을 얻기 위해 정류작용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전기적인 회로소자 또는 장치이며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졌다. 축전기는 전기회로나 설비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며, 전원반은 전원 설비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한 패널을 의미한다. 예비용 발동 발전기는 정전 시 사용을 위해 보유중인 발전기를 말한다.

- 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 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지원자산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 2. 잡종지

잡종지(雜種地)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지목 중 하나로서 방송사업에서는 송신소, 수신소의 부지가 여기에 속한다.

<p>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u>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 영업권으로 한다.</li> <li>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li> <li>나. 구입방송프로그램</li> </ol> </li> <li>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li> <li>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li> </ol>
--

### 1. 요지

본 조는 방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무형자산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사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유형에 따라 제작 방송프로그램과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 2.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자체제작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외주제작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의 제작자가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구분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순수의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서 정함에 따른다.

### 3. 구입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제작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목적으로 구입한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입방송프로그램이 외부제작방송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제 4 장 손익계산서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 및 시기는 지침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

### 1. 요지

제12조 제1항은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군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방송사업 매출액을 분류하고 있으며, 수익의 분류는 본 지침을 따르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수익의 인식 방법 등은 회사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 2. 매출액

사업자의 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2조(정의) 2호의 고유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4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을 말한다.

### 3. 사업자의 특성

방송사업매출액을 집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를 세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②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구분

하고 있다.

4. 매출액명세서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매출액을 표시하고, 매출액명세서는 당해연도의 매출액만을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기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을 세분화하지 않고, 매출액명세서는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명세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와 같이 회사의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의 차이로 인한 내역을 비교를 통해 기재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 관계자 매출액
	TV	RADIO	지상파 DMB	기 타	합계	
I. 방송사업매출액						
1.						
...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나) 행사매출액						
다)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라) 기타국고보조금 등 수익						
마) 기타						
II. 기타사업매출액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출판사업매출액						
3. 문화사업매출액						
4. 기타						
합 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명세서는 기타방송사업매출액을 방송시설임대매출액, 행사

매출액, 방송발전기금지원액(프로그램제작지원), 기타보조금 등 수익으로, 기타사업매출액을 부동산임대매출액, 출판사업매출액, 문화사업매출액 및 기타사업매출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명세서의 매체별 구분은 TV, RADIO, 지상파DMB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매출액,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및 기타로 구분되고, 방송방식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과 기타로 구분되고, 매체구분으로 SO, 위성방송, 지상파DMB, IPTV 및 기타이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
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하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포함한다.

## 1. 요지

제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분류하고 있다.

## 2. 방송사업매출액

사업자가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고유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매출액을 말한다.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크게 재송신매출액,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에 포함한다. 이는 OTT 사업을 방송사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보다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을 위해 제작 또는 구매한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판매수익은 방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방송사업 비용으로 구분되는 반면 관련 수익은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3. 실시간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보내고 있는 방송을 동일한 시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동시재송신(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하는 것을 말한다.

- 5. 광고매출액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1. 요지

제1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액을 사업별로 구분한다.

#### 2. 광고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으로 매우 중요한 계정이므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자료 상 방송사업자별 광고매출액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상황 제출 시스템에서 자동 대사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④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기타수신료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을 말한다.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라.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

## 1. 요지

제12조 제3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제1호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수신료를 구분하고 있다.

## 2. 유료방송수신료

방송서비스에 가입 혹은 특정한 방송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대가를 수수하는 요금으로 서비스 내용에 따라 기본채널수신료, 유료채널수신료, 유료VOD수신료로 구분된다. 주문형비디오(Video On Demand) 서비스는 기존의 공중파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시간의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이다. 유료VOD 수신료매출액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매출액과는 구분되며, 유료방송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VOD매출액으로 제공기술이 통신서비스(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서 방송사업외사업매출액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료VOD 수신료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예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사업매출액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명확하여야 하며 입증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진다. 한편, 기타수신료매출액의 경우 약관상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 3.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 4. 장치비매출액 :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5.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1. 요지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12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과정과 채널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다.

### 2.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상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대가로 수신료를 분배한다. 그러나 홈쇼핑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는 방송프로그램 송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이다.

### 3. 장치비매출액

제4호는 서비스 가입 관련 매출액을 정의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에 가입절차와 방송수신을 위한 시설설치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으로 가입비와 설치비가 있다. 또한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단말기 매매 및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

#### 4. 기타 방송사업 매출액

유료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물건 판매 등으로부터 정산 받는 각종 대가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방송사업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내부거래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은 방송사업매출액이 아니므로 재산상황 작성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 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 1. 요지

제12조 제4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이며, 제2호와 제3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다.

##### 2. 수신료분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신료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간의 방송수신료 분배비율을 방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적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재허가 조건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신료 배분율을 규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방송 채널사용사업자간 합리적인 수신료 분배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재허가시 평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지급관련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_법령정보\_가이드라인 중

- |  |
|--|
| <p>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u>온라인 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 판매를 포함한다.</u></p> <p>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p> <p>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p> |
|--|

### 1. 요지

제12조 제4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구분하고 있다.

### 2. 방송프로그램판매

방송프로그램판매는 방송프로그램제공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방송채널에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관 방영기간 및 횟수 등의 조건을 통한 방영권 판매, 저작권 판매, 판권판매 등의 다양한 판매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한다.

### 3. 행사매출액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라 함은 행사 자체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물론 행사를 방송하지 않더라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매출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외의 행사매출액은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처리한다.

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  
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 1. 요지

제12조 제7호는 일반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는 성격이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매출을 수수료 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 2. 홈쇼핑방송매출액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를 정보를 수집한 후 방송 이후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정산하는 보험, 여행상품, 핸드폰 등의 판매 수익도 방송사업매출액으로 처리한다.

⑥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
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한다.

1. 요지

제12조 제5항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 매출액을 기타 사업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인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9조 제1항은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내부거래수익과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은 규제목적상 영업수익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상의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수익과 자가소비사업용 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3. 기타매출액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매출액, 카달로그 판매수익, 인터넷 물 판매수익, 상품 포장 관련 수익 등은 기타사업매출액의 기타 매출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모바일앱매출액의 경우 별도 구분하며, 현재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단순 결제 방식의 차이일뿐 모두 방송사업 매출액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바,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현재 기타사업 매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1. 요지

제13조 제1항은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 2.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지침은 방송사업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별지 제5호(매출원가명세서)와 같이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및 기타로 구분하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기재토록 하였다.

구분		금액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소계			
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				
II. 기타				
III. 매출원가(I+II)				

-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 III. 매출원가는 I.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 은 기존 지침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에 해당

판매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판매비는 주로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 일반관리비는 회사의 관리 및 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을 말한다.
  -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한다.

### 1. 요지

제13조 제2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를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 2. 방송프로그램비용

방송프로그램을 취득유형에 따라 제작과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구분함에 따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방송프로그램비용으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비와 방송프로그램구입비로 구분하고 있다.

## 3. 제작비와 구입비

방송프로그램비용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이 되어야 한다. 재방영이 불가한 경우 제작 또는 구입에 관련된 모든 제작비용과 구입비용이 제작비와 구입비로 인식하지만,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방영이 될 때마다 제작비용과 구입비용의 일부만이 무형자산상각액으로 인정되고 제작비와 구입비로 인식된다.

-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상여금·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 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
  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
  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
  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
  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1. 요지

제13조 제3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2. 진부화

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기능적 감가원인이다. 물질적으로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새로운 신규 설비가 등장하여 상대적 가치가 낮아지거나 비효율 등에 의해 자산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대행수수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을 방송할 수 있으며,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광고대행수수료이다.

- 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의 제1호 가목과 같다.
    -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의 제1호 나목과 같다.
    -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사용료를 말한다.
      - (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 (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 (4) 재송신비용 :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 1. 요지

제4항은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를 분류·정의하고 있으며, 제1호는 방송프로그램비용을 세분화 하고 있다.

## 2. 방송프로그램사용료

사용료는 방송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는 각각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VOD수신료매출액과 대응된다. 다만, 기존 기본채널수신료와 대응되던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는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수신료매출액에서 방송프로그램사용료를 차감하면 채널별 매출이익을 손쉽게 인식할 있다.

## 3. 재송신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송신하는 것이다.

- 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 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 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 1. 요지

제4항 제2호는 방송프로그램비용 이외의 매출원가를 정의하는 것으로, 특히 방송프로그램 전송에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 2. 전송망사용료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송망이 없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해 전송망사업자의 전송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급하게 되는 비용이 전송망사용료이다.

## 3. 위성사용료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사업자에게 위성 사용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 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3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를 준용한다.
    -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수수료 : 제3항 제7호를 준용한다.
  10. 지급임차료 : 제3항 제8호를 준용한다.
  11. 교육훈련비 : 제3항 제9조를 준용한다.
  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 1. 요지

제5항은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정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추가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제7호

광고선전비와 제8호 판매촉진비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1. 요지

제6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를 구분정의하고 있다. 제2호는 방송프로그램 송출 혹은 전송과 관련한 비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상품 등과 관련된 비용을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2. 홈쇼핑송출수수료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항목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사업자 등에게 지불하는 방송프로그램 송출대가이며, 송출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3. 전송망사용료와 위성사용료

채널 사용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로 전송사업자 혹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위성사용료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사용료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계정이다.

#### 4. 상품 등 매출원가

상품 등 매출원가는 상품 등 매출액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매입원가이다.

-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5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제5항 제7호를 준용한다.
  8. 지급수수료 : 제5항 제9호를 준용한다.
  9. 지급입차료 : 제5항 제10호를 준용한다.
  10. 교육훈련비 : 제5항 제11조를 준용한다.
  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 1. 요지

제7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를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가입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촉진활동이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에서 판매촉진비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 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 충당부채 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 1. 요지

본 조는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도 영업외손익을 본 조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된 계정들의 재분류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 1. 요지

본 조는 둘 이상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결합판매의 수익을 개별 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부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상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본 지침에서는 매출액을 분리하여야 한다.

## 2. 결합판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결합판매라 한다.

제16조(권역별 회계) 둘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비용은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 1. 요지

둘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부 정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방송사업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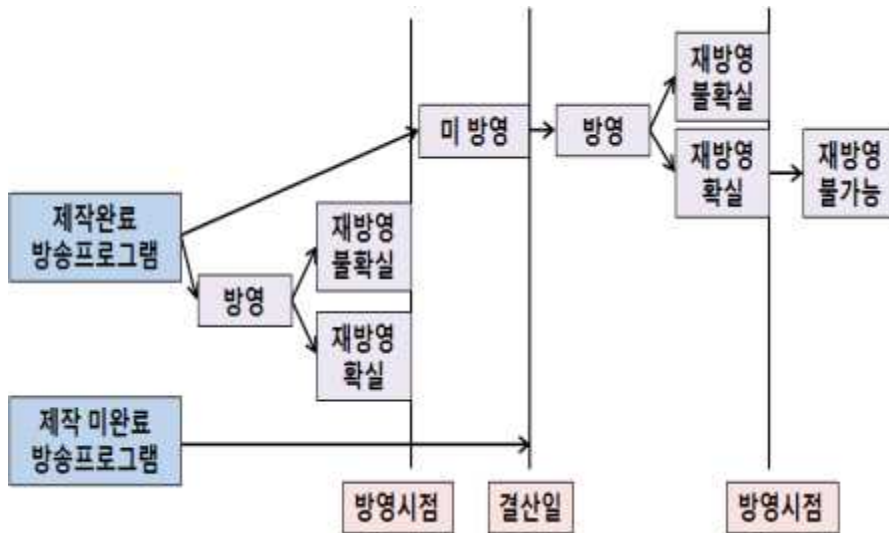
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이 부여된 방송구역을 의미한다. 방송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 5 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가 자체제작 혹은 외주제작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거래발생시점, 방영시점 혹은 결산일에 수행하게 되며, 회계처리 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완료 여부, 방영여부, 재방영 여부와 재방영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 2. 회계처리

## 가. 거래발생시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제작 혹은 구입과정에서 관련 지출액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하며,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원가를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제작비, 외주제작비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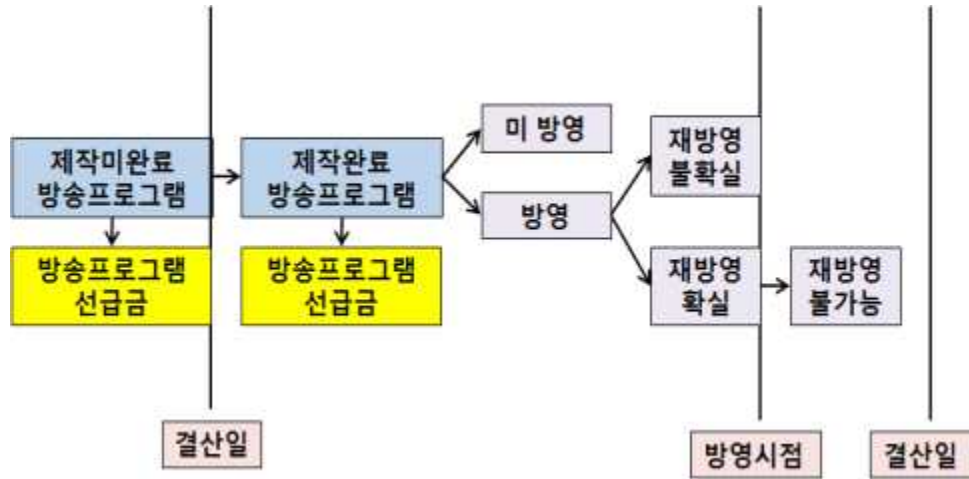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방송제작을 위하여 탤런트 A씨의 출연료 50,000,000원을 20X1년 7월 31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 탤런트 A의 출연료 50,00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과 관련된 거래는 이와 같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처리 한다.

20X1 7/31

(차) 탤런트 A의 출연료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 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제작기간이 통상적인 회계기간인 1년 보다 큰 경우 혹은 제작기간이 1년보다 짧지만, 제작기간이 2개의 회계연도 이상에 걸친 경우이다.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한 자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인 선급금으로 제작완료될 때까지 회계처리 하되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으로 회계처리 한다.

20X1 회계연도 결산일에 제작미완료인 “방송프로그램 P” 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방송프로그램 P” 는 20X1년 6월에 제작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제작과 관련하여 100,000,000을 지출하였으며, 20X2년 7월 31일까지 제작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완료하였다. “방송프로그램 P” 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에는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000



20X2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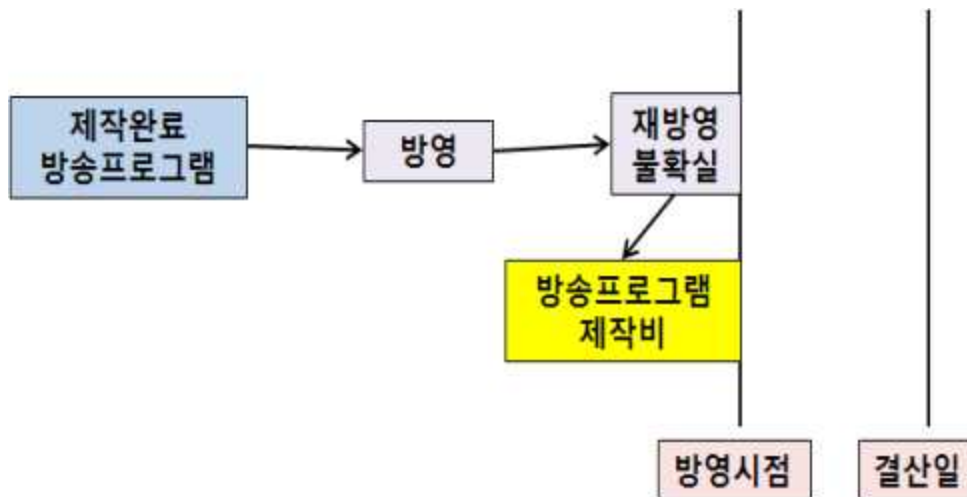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000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된 이후의 회계처리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미방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된다.

다.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

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제작완료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Q” 와 같이 당기인 20X1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7월 31일 제작-완료된 경우와 전기인 20X0 회계연도에 제작을 시작하여 당기인 20X1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제작-완료된 “방송프로그램 R” 이 있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Q와 R이 결산일 이전에 방영되는 시점에서 재방영이 불확실 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로 아래와 같이 비용화 하여야 한다.

20X1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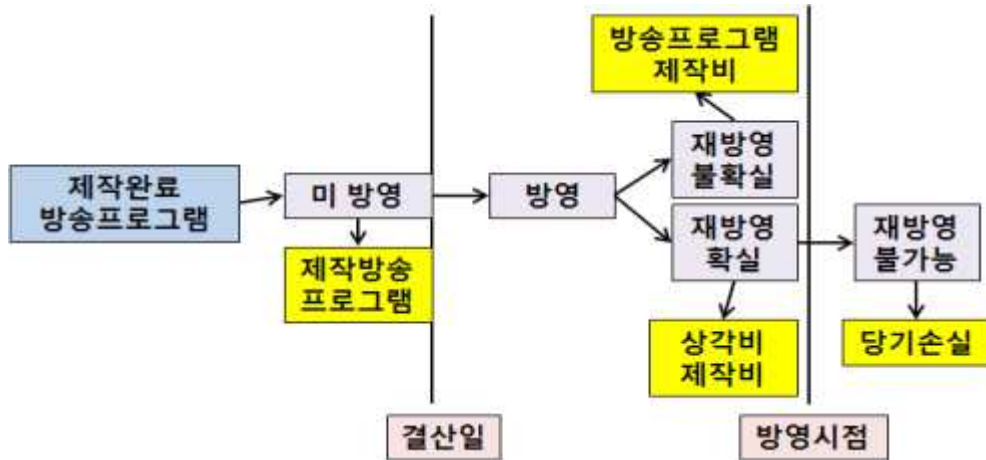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300,000,000

(Q)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R) 300,000,000

라.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

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방송프로그램 S” 는 20X1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에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프로그램 S는 결산일에 무형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 한다.

20X1 12/31

(차) 제작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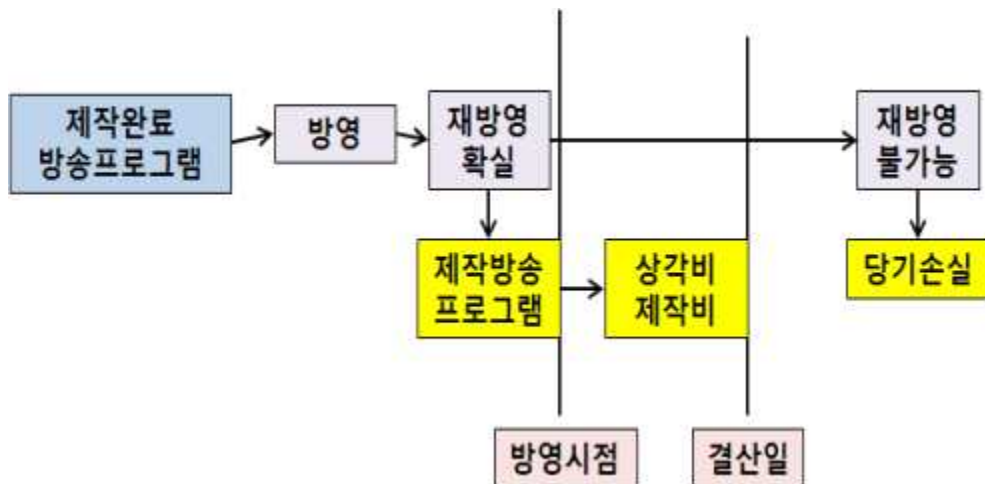
300,000,000

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S” 가 방영되는 경우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재방영 여부 등에 따라 방영시점에 회계 처리된다.

마.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

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이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재방영이 불확실한 경우와 달리 무형자산의 “제작방송프로그램” 으로 자산화 한다. 이후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하여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i) “방송프로그램 Q” 와 “방송프로그램 R” 이 20X1년 8월 15일 방영되고, 재방영이 확실하다고 인식된다.

20X1 8/15			
(차) 제작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출액(Q)	300,000,000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R)	300,000,000

ii) 20X1년 12월 31일 재방영 경험을 등을 고려하여 상각하고 비용화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재방영 경험에 의하여 20X1년의 상각율이 1/3이라면, 상각비와 방송프로그램제작비는 100,000,000원이 되며, 장부가액은 200,000,000이 된다.

20X1 12/31			
(차) 상각비	100,000,000	(대) 상각누계액	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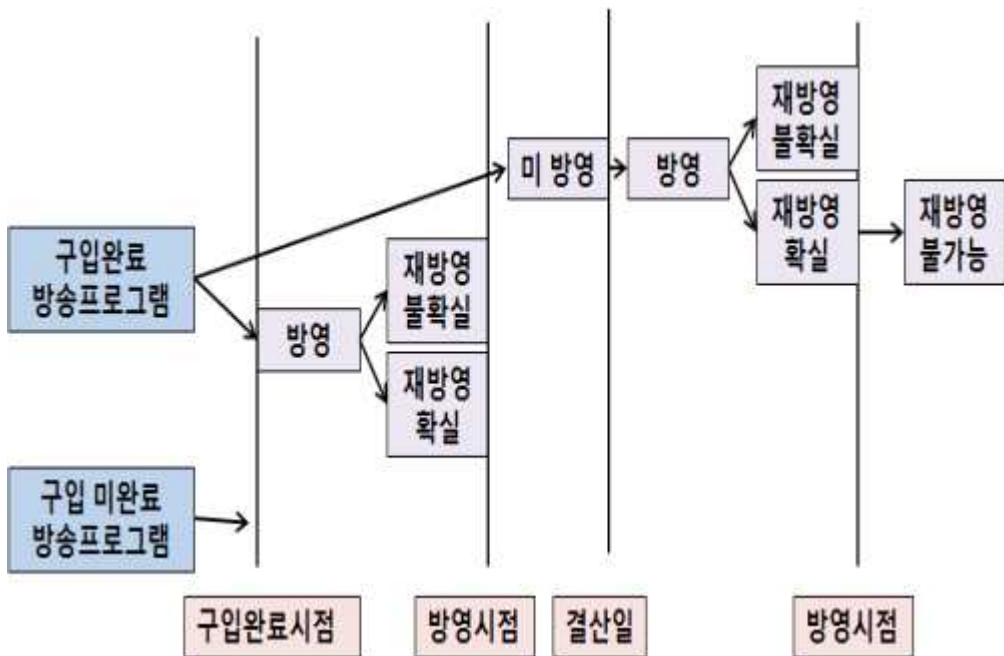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00,000,000	(대) 상각비	100,000,000

iii) 무형자산 계상 후에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경우,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상기의 예에서 20X2년 1년동안 재방영되지 못했으며, 결산일에 재방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가액 200,000,000원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X2 12/31			
(차) 손상차손	200,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000

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가 구입 혹은 임차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회계처리는 구입완료시점, 방영시점 혹은 결산일에 수행하게 되며, 회계처리 방법은 방송프로그램의 구입 완료 여부, 방영여부, 재방영 여부와 재방영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2. 회계처리

가. 거래발생시점

방송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구입과정에서 관련 지출액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구

입하기 위하여 거래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방송프로그램 R” 를 구입하기 위하여 20X1년 7월 31일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 계약금 50,00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방송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거래는 이와 같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처리 한다.

20X1 7/31			
(차) 계약금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 나.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구입기간이 통상적인 회계기간인 1년 보다 큰 경우 혹은 구입기간이 2개의 회계연도에 걸친 경우를 의미한다.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방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자산인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되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으로 회계처리 한다. 상거래를 인식하는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과 관련 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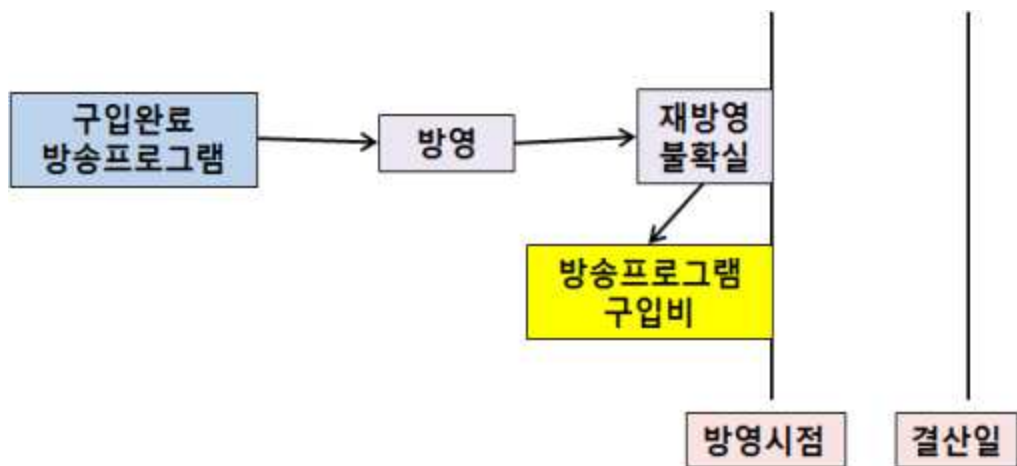
20X1 회계연도 결산일에 제작미완료인 “방송프로그램 T” 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방송프로그램 T” 는 20X1년 6월에 구입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구입과 관련하여 100,000,000을 지출하였으며, 20X2년 7월 31일까지 구입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후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완료하였다. “방송프로그램 S” 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100,000,000
20X2 7/31			
(차)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200,000,000

방송프로그램 구입이 완료된 이후의 회계처리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미방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된다.

다.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이후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

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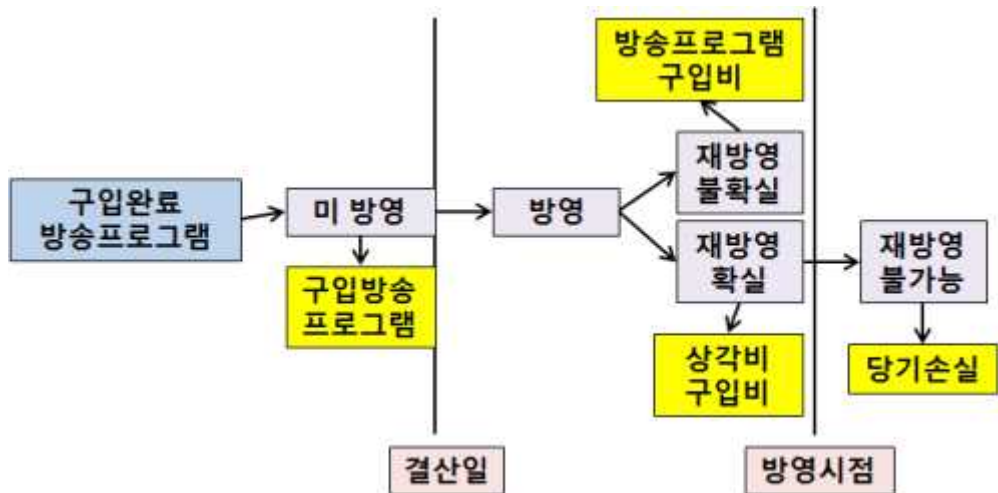
구입완료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U” 와 같이 당기인 20X1 회계연도 1월 1일부

터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지출하여 구입완료된 경우와 전기인 20X0 회계연도에 구입활동을 시작하여 당기인 20X1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300,000,000원을 지출하여 구입완료된 “방송프로그램 V” 가 있을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U와 V” 가 결산일 이전에 방영되는 시점에서 재방영이 불확실 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로 아래와 같이 비용화 하여야 한다.

20X1 7/31			
(차) 방송프로그램구입비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U) 혹	300,000,000
		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V)	300,000,000

라.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

3. 결산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약 “방송프로그램 W” 는 20X1 회계연도 결산일 이전에 300,000,000원을 지출하고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않은 경우, 결산일에 무형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방송 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 한다.



20X1 12/31

(차) 구입방송프로그램 3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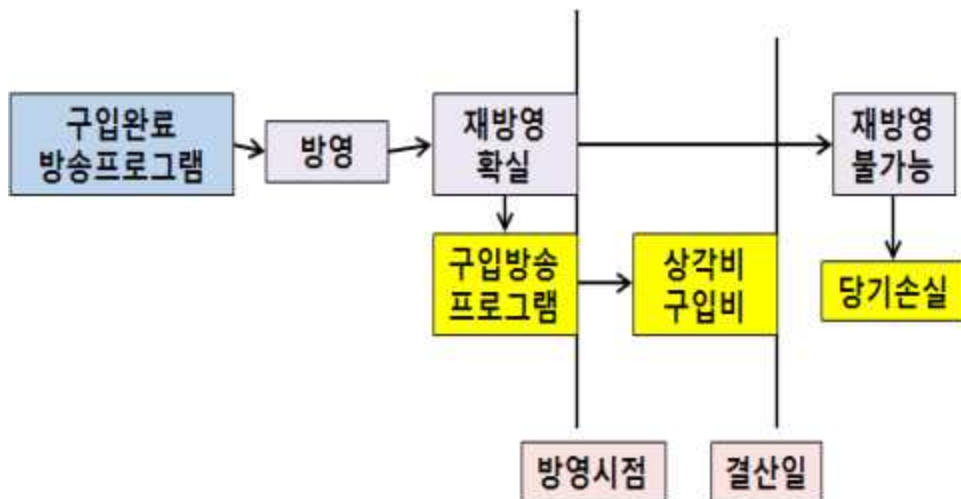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300,000,000

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W”가 방영되는 경우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재방영 여부 등에 따라 방영시점에 회계처리 된다.

마.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구입이 완료되고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영이 확실한 경우는 재방영이 불확실한 경우와 달리 무형자산의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자산화 한다. 이후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하여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i) “방송프로그램 U” 와 “방송프로그램 V” 가 20X1년 8월 15일 방영되고, 재방영이 확실하다고 인식된다.

20X1 8/15			
(차) 구입방송프로그램	300,000,000	(대) 방송프로그램 구입관련 지출액 (U)	300,000,000
		혹은 방송프로그램선급금(V)	300,000,000

ii) 20X1년 12월 31일 재방영 경험을 등을 고려하여 상각하고 비용화 한다. 내용연수가 3년이고 재방영 경험에 의하여 20X1년의 상각율이 1/3이라면, 상각비와 방송프로그램구입비는 100,000,000원이 되며, 장부가액은 200,000,000이 된다.

20X1 12/31			
(차) 상각비	100,000,000	(대) 상각누계액	100,000,000

20X1 12/31			
(차) 방송프로그램구입비	100,000,000	(대) 상각비	100,000,000

iii) 무형자산 계상 후에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 경우,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상기의 예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한 차례 방영한 이후 20X2년 12월 31일 재방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200,000,000원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20X2 12/31			
(차) 손상차손	200,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00,000,000

## [참고]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

## 1) 제작방송프로그램

구 분	결산기일 현재		결산기일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작진행 상태	방영상태	재방영 가능여부	자산계정	손익계정
1	제작완료	당기 방영	확실	무형자산 (제작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당기 상각액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에 대한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2			불확실	-	당기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3		미방영	-	무형자산 (제작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원가처리
4	제작중	-	-	방송 프로그램 선급금	제작완료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이전된 후 무형자산의 비용화 절차 따름

※ 제작 완료되어 결산일 현재 미방영 상태인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당기 매출원가처리하거나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을 통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 장기 제작물의 경우 원고료 등의 선급금은 최종 제작 완료전이라도 총 방영 횟수를 추정하여 회당 제작비 원가 처리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예) 24부작 사극 원고료 12억을 선급한 경우 지급시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처리하였고 당기 12부 방영(재방영 불확실)되었기에 당기 원가 처리시 6억(=12억\*12부/24부)의 원고료를 매출원가 처리하였다.

2) 구입 방송프로그램

구분	결산기일 현재		결산기일 이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작진행 상태	방영상태	재방영 가능여부	자산계정	손익계정
1	구입완료	당기 방영	확실	무형자산 (구입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부터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당기 상각액 (방송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2			불확실	-	당기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매출원가명세서 작성)
3		미방영	-	무형자산 (구입방송 프로그램)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원가처리
4	구입중	-	-	방송 프로그램 선급금	구입완료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이전된 후 무형자산의 비용화 절차 따름

※ 구입 완료되어 결산일 현재 미방영 상태인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재방영여부를 고려하여 당기 매출원가처리하거나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을 통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 장기사용계약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사용기간 동안 재방영이 확실하다면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하고, 재방영이 불확실하다면 방영된 분량(총 104부작 사극을 2년간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당기 52부작 방영했다면 52부작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구입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방송프로그램 명세서

\* 편의상 제작방송프로그램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구분	제작		구입	
	재무상대표	금액	재무상대표	금액
기초금액	방송프로그램선급금	1,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2,000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3,000	소계	
당기증가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증가	3,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증가	
	<b>무형자산 증가*</b>	-	<b>무형자산 증가*</b>	
	소계	3,000	소계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2,5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500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3,000	소계	
기말금액	방송프로그램선급금	2,000	방송프로그램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1,000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소계	3,000	소계	

\* 무형자산 당기 증가분 중 방송프로그램선급금이 당기 제작 및 구입 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증가한 무형자산 증가금액은 제외한다.

선급금		무형자산	
기초	1,000	기초	2,000
증가	3,000	매출원가	2,500
계	4,000	재방영X	2,000
		재방영	상각 500
		손상차손	500
		기말	1,000
		미방영	500
		재방영	500
		계	4,000

## 제 6 장 보 칙

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요지

본 조는 회계자료 양식,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2. 회계자료

회계자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와 경영자확인서가 있다.

### 3. 검증자료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며, 외감법 상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대체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4조는 외부인의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로 규정하고 있다.

**<외감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외감법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요지

본 조는 회계자료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2. 징수 관련 회계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대상인 방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구분	회계자료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권역별 방송사업매출액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IPTV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매출액
홈쇼핑방송사업자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3. 보존기간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5년간 보존하는 이유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의하여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방송사업자가 분담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1. 요지

본 조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1. 요지

본 조는 사업자의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를 설명하고 있다.

### 2. 영업 비밀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 · 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매년말 제출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개되는 재산상황은 방송사업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이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요지

본 조는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설명하고 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2021. 2. 5, 일부개정)로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 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훈령 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 〈해설서 부록〉

1.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작성예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3. 영업보고서 별지 서식
4. 관련 법조항

## 부록 1)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작성예제

## 1) 예제 1: 제작완료 - 미방영

##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	---------	--------------	---------

##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	---------	--------------	---------

기초 선급금 = 100,000

기말 선급금 = 100,000 + 200,000 - 0 = 300,000

###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100,000	소계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무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소계	200,000	소계	
당기감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프로그램구입비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손상차손	
		소계	소계	
기말금액	선급금	300,000	선급금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계	300,000	소계	

## 2) 예제 2: 제작완료 - 방영 - 재방영 불확실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③ 7/31/x2 (차)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	(대) 선급금	300,000

##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터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100,000	소계	-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	
	소계	200,000	소계	-	
당 기 감 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300,0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	무형자산손상차손	-
	소계	300,000	소계	-	
기말금액	선급금	-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	소계	-	

3) 예제 3: 제작완료 -방영 - 재방영 확실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100,000
---------	---------	--------------	---------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관련 지출액	200,000
---------	---------	--------------	---------

③ 7/31/x2

(차) 무형자산	300,000	(대) 선급금	300,000
----------	---------	---------	---------

④ 7/31/x2

(차) 상각비(매출원가)	100,000	(대) 무형자산	100,000
---------------	---------	----------	---------

기초 선급금 = 100,000

기중 선급금 증가 = 200,000

매출원가(무형자산상각비) = 100,000

기말 선급금 = 100,000 + 200,000 - 300,000 = 0

무형자산 기말 = 기초 + 기중 - 매출원가 = 300,000 - 100,000 = 200,000



##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0x년 xx월 xx일부200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방송프로그램		구입방송프로그램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기초금액	선급금	100,000	선급금	-	
	무형자산	-	무형자산	-	
	소계	100,000	소계	-	
당기증가	선급금증가	200,000	선급금증가	-	
	무형자산 증가	-	무형자산 증가	-	
	소계	200,000	소계	-	
당 기 감 소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00,000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	무형자산손상차손	-
		소계	100,000	소계	-
기말금액	선급금	-	선급금	-	
	무형자산	200,000	무형자산	-	
	소계	200,000	소계	-	

## 4) 예제 4: 제작완료 - 방영 - 재방영 - 손상차손

## ① 12/31/x1

(차) 선급금 100,000 (대) 제작 관련 지출액 100,000

## ② 7/31/x2

(차) 선급금 200,000 (대) 제작 관련 지출액 200,000

## ③ 7/31/x2

(차) 무형자산 300,000 (대) 선급금 300,000

## ④ 7/31/x2



## 부록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계정과목	해 설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재고자산 외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현금	보유 현금 즉,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등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
2)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으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에금,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투자자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당좌차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은행거래약정 등이 있다.
3) 기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
2. 단기투자자산	①지분법 투자자산, ②매출채권, ③현금 및 현금성자산, ④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계정을 예로 들 수 있다.
1) 유동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인식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2) 유동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1) 대여금 및 수취채권 (2) 만기보유금융자산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 유동만기보유 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 중 유동성 항목. 다만, 다음을 제외함. (1)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3)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4)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계정과목	해설
	제외)으로 유동성 항목에 해당하는 것.
5) 유동파생상품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서반 제6장 파생상품 및 K-IFRS기준서 제1039호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함. 다만, 금융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함. 이러한 파생상품자산은 상기의 유동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표시하거나 별도로 '유동파생상품자산'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음.
6) 기타유동금융자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동성 금융자산
3. 단기대여금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대여처에 따라 중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으로 구분되기도 함. 단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정정보조금이 있다면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중 유동성 항목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5. 미수금 (대손충당금)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중 유동성 항목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6.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 중 미수된 금액으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등을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7. 선금금 (대손충당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선지급된 금액으로 본 지침 제8조(선금금)과 같이 일반선금금과 방송프로그램선금금으로 구분함
8. 선금비용	선금된 비용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
9. 이연법인세자산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혹은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결산일로부터 일년이내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10. 당기법인세자산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법인세 초과 납부로 인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납부할 금액에서 상계할 금액
11. 기타당좌자산	1~10 계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계정과목	해설
(2) 재고자산	본 지침 제9조(재고자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2.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을 말함
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으로 대여처에 따라 종업원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기타의 대여금으로 구분되기도 함.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정정보조금이 있다면 제거한 순액으로 한다.
4. 기타투자자산	장기금융자산, 비유동파생상품자산 등과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
(2).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기타 설비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방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2. 교환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3. 전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4. 선로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4호 및 해설서에 따름
5. 단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5호 및 해설서에 따름
6. 정보처리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6호 및 해설서에 따름

계정과목	해설
7. 전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7호 및 해설서에 따름
8. 건설중인 자산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8호 및 해설서에 따름
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2항제9호 및 해설서에 따름
B. 일반지원자산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토지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4.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4호 및 해설서에 따름
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5호 및 해설서에 따름
6. 건설중인자산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6호 및 해설서에 따름
7. 기타 (감가상각누계액)	본 지침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제3항제7호 및 해설서에 따름
(3). 무형자산	
1. 영업권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1호 및 해설서에 따름
2. 방송프로그램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2호 및 해설서에 따름
1) 제작방송프로그램	
2) 구입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3호 및 해설서에 따름
5. 기타 무형자산	본 지침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제5호 및 해설서에 따름
(4)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사용권자산의 정의는 K-IFRS제1116호를 준용함
(5) 기타 비유동자산	(1)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금, 순확적급여자산 등이 해당됨
자산총계	

계정과목	해설
[부채]	
I. 유동부채	
1. 매입채무	금융부채의 하나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상환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및 K-IFRS 제1001호에 따라 유동성으로 분류되는 차입금
3. 미지급금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중 보고기간 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 중 유동성 항목
4. 미지급비용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중 유동성 항목
5. 이연법인세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소소득(세무상 결손금)결정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결산일로부터 일년이내에 가산할 법인세
6. 당기법인세부채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금융부채 중 유동성 항목
7. 기타유동부채	1내지 6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부채로써 예수금, 선수수익, 단기금융리스부채 등이 해당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보고기간 후 1년 후에 결제될 예정인 차입금
2. 기타 총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일년 이내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총당부채 외 총당부채
3. 이연법인세부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4. 기타 고정부채	1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로써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사채, 장기선수수익, 퇴직급여총당부채 순확정급여부채 등이 해당
부채총계	

계정과목	해 설
[자본]	
I. 자본금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을 포함
II.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해당
III. 자본조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해당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잔액
V.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1. 이익준비금	기업에 유보되는 이익 중 상법 제258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외 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
3. 임의적립금	법령의 요구사항이 아닌,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된 준비금 등
4.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처분전 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 결손금.
자본총계	
[자본과부채총계]	



부록 3) 영업보고서 별지 서식

서 식	구 분
제1호 서식	재무상대표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2-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2-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3호 서식 매출액명세서	제3-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3-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액명세서
제4호서식 매출원가명세서	제4-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4-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4-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매출원가명세서
제5호 서식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6호 서식	협찬매출액명세서
제7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8호 서식 영업통계	제8-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8-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8-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영업통계
제9호 서식	경영자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자산</b>					
<b>I 유동자산</b>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투자자산					
3. 단기대여금					
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7. 선급금					
(대손충당금)					
가 일반 선급금					
나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8. 선급비용					
9. 이연법인세자산					
10. 당기법인세자산					
11. 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b>II 비유동자산</b>					
(1) 투자자산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 장기투자증권					
3.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4. 기타투자자산					
(2) 유형자산					
A. 방송통신설비					
1. 방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교환설비					
	(감가상각누계액)					
3.	전송설비					
	(감가상각누계액)					
4.	선로설비					
	(감가상각누계액)					
5.	단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6.	정보처리설비					
	(감가상각누계액)					
7.	전원설비					
	(감가상각누계액)					
8.	건설 중인 자산					
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B.	일반지원자산					
1.	토지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	건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6.	건설 중인 자산					
7.	기타					
	(감가상각누계액)					
(	무형자산					
1.	영업권					
2.	방송 프로그램					
가	제작 방송 프로그램					
나	구입 방송 프로그램					
3.	개발비					
4.	기타 무형자산					
(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비유동 자산					

<b>자 산 총 계</b>					
<b>부채</b>					
<b>I 유동부채</b>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금				
4.	미지급비용				
5.	이연법인세부채				
6.	당기법인세부채				
7.	기타유동부채				
<b>II 비유동부채</b>					
1.	장기차입금				
2.	기타 총당부채				
3.	이연법인세부채				
4.	기타비유동부채				
<b>부채 총 계</b>					
<b>자본</b>					
<b>I 자본금</b>					
<b>II 자본잉여금</b>					
<b>III 자본조정</b>					
<b>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 이익잉여금</b>					
<b>자본총계</b>					
<b>부채와자본총계</b>					

(주1)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본점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2) 회사의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의 규정상 차이로 인한 설명은 각 계정별 비교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 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지상파DMB 광고매 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7. 기타 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b>II 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b>III 매출총이익</b>					
<b>IV 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지급수수료				
	8.	지급임차료				
	9.	교육훈련비				
	10.	기타				
<b>V. 영업손익</b>						
<b>V 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 이익				
	3.	기타 영업외수익				
<b>VI 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 손실				
	4.	기타 영업외비용				
<b>VI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b>						
<b>IX 계속사업법인세비용</b>						
<b>X 계속사업손익</b>						
<b>X 중단사업손익</b>						
(법인세효과 : XXX원)						
<b>XI 당기순손익</b>						

(주1) 회사의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의 규정상 차이로 인한 설명은 각 계정별 비교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 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라.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4. 장치비매출액					
5.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기타매출액					
<b>II. 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i)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①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					
②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ii)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iii) 유료VOD프로그램사용료					
iv) 재송신비용					
2. 기타 매출원가					
가. 전송망사용료					
나. 위성사용료					
다. 기타					
<b>III. 매출총이익</b>					
<b>IV. 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방송통신발전기금					
		나.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판매촉진비					
	9.	지급수수료					
	10.	지급임차료					
	11.	교육훈련비					
	12.	기타					
<b>V.</b>		<b>영업손익</b>					
<b>VI.</b>		<b>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b>VII.</b>		<b>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b>VIII.</b>		<b>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b>					
<b>IX.</b>		<b>계속사업법인세비용</b>					
<b>X.</b>		<b>계속사업손익</b>					
<b>XI.</b>		<b>중단사업손익</b>					
		(법인세효과 : XXX원)(주1)					
<b>XII.</b>		<b>당기순손익</b>					

(주1)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본점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2) 회사의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의 규정상 차이로 인한 설명은 각 계정별 비교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손익계산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목	회계연도		비율분석		비고
	20X1년	20X2년	20X1년	20X2년	
<b>I. 매출액</b>					
(1) 방송사업매출액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1.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 사업매출액					
가. 모바일앱매출액					
나. 기타사업매출액					
2. 홈쇼핑방송사업자외 사업 자의 기타사업매출액					
<b>II. 매출원가</b>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2. 기타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나. 전송망사용료					
다. 위성사용료					
라. 상품 등 매출원가					
마. 기타					
<b>III. 매출총이익</b>					
<b>IV. 판매관리비</b>					

	1.	인건비				
	2.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4.	복리후생비				
	5.	세금과공과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나	기타세금과공과				
	6.	광고대행수수료				
	7.	광고선전비				
	8.	지급수수료				
	9.	지급임차료				
	10.	교육훈련비				
	11.	기타				
<b>V.</b>		<b>영업손익</b>				
<b>VI.</b>		<b>영업외수익</b>				
	1.	이자수익				
	2.	지분법이익				
	3.	기타영업외수익				
<b>VII</b>		<b>영업외비용</b>				
	1.	이자비용				
	2.	기부금				
	3.	지분법손실				
	4.	기타영업외비용				
<b>VIII</b>		<b>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b>				
<b>IX.</b>		<b>계속사업법인세비용</b>				
<b>X.</b>		<b>계속사업손익</b>				
<b>XI.</b>		<b>중단사업손익</b>				
		(법인세효과 : XXX원)				
<b>XII</b>		<b>당기순손익</b>				

(주1) 회사의 기업회계기준과 본 지침의 규정상 차이로 인한 설명은 각 계정별 비교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 관계자 매출액
	TV	RADIO	지상파 DMB	기타	합계	
<b>I. 방송사업매출액</b>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2. 재송신매출액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4. 광고매출액						
가) 지상파광고매출액						
나)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다) 방송채널사용사업광고매 출액						
5. 협찬매출액						
6.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시설임대매출액						
나) 행사매출액						
다)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라) 기타국고보조금 등 수익						
마) 기타						
<b>II. 기타사업매출액</b>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출판사업매출액						
3. 문화사업매출액						
4. 기타						
<b>합 계</b>						

(주1) 사업자의 주된 사업으로써의 임대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 대상이며, 부수적인 수준의 임대매출액은 영업외수익 처리한다.

(주2)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3-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기타	합계	특수관계자 매출액
<b>I.</b>	<b>방송사업매출액</b>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다)	유료VOD수신료 매출액					
라)	기타수신료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4.	장치비매출액					
5.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b>II.</b>	<b>기타사업매출액</b>					
1.	전기통신사업매출액					
2.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3.	기타사업매출액					
<b>합 계</b>						

(주1) 방송매출액은 아날로그, 디지털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주2) 특수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로 특수관계자별로 주기표시한다.

(주3)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채널단위로묶어파는기본상품의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4)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이란기본채널단위로묶음에포함되지아니하고채널추가에따라채널마다추가요금을받고제공하는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한다.

(주5) 유료VOD수신료매출액이란VOD(PPV등포함)서비스제공에따른매출액으로한다.

(주6) 기타수신료매출액이란 주3부터 주5를 제외한 수신료매출액으로 약관상 가입자에게 받는 수신료로 부가서비스수익을 포함한다.

(주7) 장치비매출액은 단말 설치 및 이전대가, 정상적인 단말장치 판매수익을 포함한다.

(주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중 기타는 프로그램제작지원 외 목적으로 지원받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 목	매체구분						특수관계자 매출액
	SO	위성 방송	지상파 DMB	IPTV	기타	합계	
<b>I. 방송사업매출액</b>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2. 광고매출액							
3. 협찬매출액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6. 행사매출액							
7. 홈쇼핑방송매출액							
가. 수수료매출액							
나. 상품 등 매출액							
다. 기타							
8.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가. 방송발전기금지원액 (프로그램제작지원)							
나. 기타국고보조금등수익							
다. 기타							
<b>II. 기타사업매출액</b>							
1. 부동산임대사업매출액							
2. 기타사업매출액							
가. 홈쇼핑방송사업자 기타사업매출액							
나. 모바일앱매출액							
다. 기타매출액							
나. 홈쇼핑방송사업자 외사업자 기타사업 매출액							
합 계							

(주1) 방송매출액은 채널을 공급하는 플랫폼(SO, 위성방송, IPTV 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2)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수수료형태매출액과 직매입 등을 통한 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홈쇼핑방송사업자는 기타사업매출액을 모바일앱매출액과 그 외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한다.

(주4)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별지 제4-1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b>소계</b>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b>소계</b>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b>당기 제작원가(1+2+3)</b>				
<b>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b>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소계			
<b>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b>				
<b>II. 기타</b>				
<b>III. 매출원가(I+II)</b>				

- ※ 전기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 III. 매출원가는 I.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기타 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유료방송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1. 인건비	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3.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당기 제작원가(1+2+3)				
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b>소계</b>			
③ 방송프로그램사용료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ㄱ.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			
	ㄴ. 무료VOD프로그램사용료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유료VOD프로그램사용료			
	재송신비용			
<b>I. 방송프로그램비용 합계(①+②)</b>				
<b>II. 기타 매출원가</b>				
	① 전송망사용료			
	② 위성사용료			
	③ 기타			
<b>III. 매출원가(I+II)</b>				

- ※ 전기이전에 선금금 또는 무형자산 제작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 III. 매출원가는 I. 프로그램비용(프로그램 제작비과 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원가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금액		
방송프로그램비용		직접원가	간접원가	합계
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 인건비	급여 (각종 제수당 포함)			
	잡급			
	퇴직급여			
	소계			
2. 인건비 제외 직·간접제작비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미술재료비			
	기획비			
	제작진행비			
	외부장비이용료			
	외부시설이용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외 무형자산) 상각비			
	여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법정부담금			
	보험료			
	지급수수료			
	임차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기타				

		소계			
<b>3. 외주제작비</b>		외주제작비			
<b>당기 제작원가(1+2+3)</b>					
<b>② 방송프로그램 구입비</b>		무형자산(구입방송프로그램) 상각비			
		기타 방송프로그램구입비			
		<b>소계</b>			
<b>I. 방송프로그램비용(①+②)</b>					
<b>II. 기타</b>					
① 홈쇼핑송출수수료					
② 전송망사용료					
③ 위성사용료					
④ 상품 등 매출원가					
⑤ 기타					
<b>III. 매출원가(I+II)</b>					

- ※ 전기이전에 선금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되었던 제작방송프로그램이 당기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 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처리하며 무형자산 처리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한다.
- ※ III. 매출원가는 I. 방송프로그램비용(방송프로그램 제작비과 방송프로그램 구입비)과 II.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된다.
- ※ 제작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하여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상각비 계정이 아닌 당기 상각액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인건비/인건비 제외 직·간접 제작비/외주제작비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제작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금액		금액
기초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b>소계</b>		<b>소계</b>	
당기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증가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증가	
	무형자산증가(주1)		무형자산가(주1)	
	<b>소계</b>		<b>소계</b>	
당기 감소	매출 원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방송 프로그램 구입	
	영 업 외 비 용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손상차손	
	<b>소계</b>		<b>소계</b>	
기말금액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방송프로그램 선급금	
	무형자산 (제작방송프로그램)		무형자산 (구입방송프로그램)	
	<b>소계</b>		<b>소계</b>	

(주1) 무형자산 당기 증가분 중 방송프로그램선급금이 당기 제작 및 구입 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증가한 무형자산 증가금액은 제외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협찬매출액명세서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소재지(주1):

(단위 : 원)

구분	공익 성캠페인	제작협찬		공익행사 (문화예술, 스포츠등)	기타 (시상품등)	합계
		자체제작	외주제작			
TV						
RADIO						
DMB						
합계						

(주1) 방송사업자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공정가액(시장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한 현물 협찬의 경우 공정가액을 협찬매출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방청객 등에게 지급된 상품권등의 경우라도 협찬매출액으로 처리한 후 매출원가 처리한다.

(주3) 유료방송사업자는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제7호 서식)

##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 원)

주주명	출자비중				방송 사업자 여부	특수관계 여부 (주2)	외국인 여부 (주3)
	주식수 (개)	투자 금액	지분 율(%)	변동율 (%) (주1)			
<b>합계(주4)</b>							

- (주1) 전기 지분율 52%였던 주주가 당기 50%로 지분율 변동하였다면 변동율은 "-2"로 기재한다.
- (주2) 특수관계자 여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다.
- (주3) 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 (주4)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만 표시하되, 특수관계 주주는 5%미만이라도 모두 기재하고, 기타주주는 기타소액주주로 기재하여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

## 지상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구분	과 목		TV	RADIO	합계
KBS	1.	가입자수(주1)			
	가)	기초 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 가입자			
	2.	당기수신료징수비용(주1)			
	가)	인건비			
	나)	위탁징수비			
	다)	기타경비			
모 든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3.	당기광고운영비			
	가)	인건비			
	나)	광고대행수수료			
	다)	기타경비			
	4.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3)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5.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4)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주1) KBS만 작성: 가입자수 및 수신료 징수비는 KBS의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징수대상가입자수와 한전에 지급하는 위탁징수비 등 징수관련 직접 비용임

(주2)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 수입과 관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KOBACO, MEDIACRE8등)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 및 광고운영 관련 직접비용임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8-2호 서식)

### 유료방송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명/개/원)

과 목		아날로그	디지털
<b>1.</b>	<b>가입자수(주1)</b>		
가)	기초가입자		
나)	순증가입자		
①	신규가입자		
②	해지가입자		
다)	기말가입자		
<b>2.</b>	<b>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주2)</b>		
가)	기본채널수신료		
나)	유료채널수신료		
다)	장치비매출액		
라)	기타가입자수익		
<b>3.</b>	<b>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3)</b>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b>4.</b>	<b>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4)</b>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b>5.</b>	<b>기말채널운영현황(전체)</b>		
가)	운영채널		
①	비디오		
②	오디오		
③	데이터		
나)	여유채널		
다)	기타채널		
라)	장애채널		

(주1) 가입자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단자수기준 유료방송가입자의 신규 및 해지에 따른 순증 가입자와 연말시점 누적가입자수를 기재한다.

(주2)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하여 상품구성항목별 월평균 가입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주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4) 국내구매 :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5) 채널운영현황은 전체가용채널을 운영채널수와 여유채널수(예비), 기타채널(망감시), 장애채널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8-3호 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업통계

제X(당)기 20x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개/원)

과 목		현 황
1.	채널공급유형(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2.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주1)	
가)	기본형	
나)	유료형	
다)	V O D 형	
라)	기타	
3.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주2)	
①	특수관계자외주	
②	기타외주	
4.	외부구입방송프로그램(주3)	
①	국내구매	
②	해외구매	
5.	기말방송프로그램송출현황(전체)(주4)	
가)	종합유선방송(SO)	
나)	위성방송	
다)	지상파디엠비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마)	특수관계자	

(주1) 아날로그 및 디지털 구분없이 회사가 송출하는 플랫폼(SO, 위성, 위성DMB, 지상파DMB, IPTV 등)의 채널 유형에 따른 결산일 현재 공급유형을 기록한다.

- 기본형이란 채널단위로 묶어파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하며,
- 유료형이란 기본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널에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 VOD형이란 VOD(PPV 등 포함)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주2)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 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주3) 국내구매: 국내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해외구매: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4) 송출현황은 플랫폼 매체별로 자사의 채널송출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복수의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중복하여 산출한다.

가)~마)는 특수관계자가 제외된 채널송출수를 기재하고 특수관계자 송출 현황은 바)에 기재한다.

(별지 제9호 서식)

### 경영자확인서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과 재산상황 담당자 000은 본 재산상황보고서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거짓 또는 왜곡없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재산상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 4. 관련 법조항

##### □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재산상황 제출 자료 및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산상황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② 법 제9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그 밖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다만,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 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항**

-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과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 부 록 3 >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등 사업자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방송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이하 “회계자료” 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업회계기준 등의 준용)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및 경영자확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5조(사업자의 매출액 구분)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 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의 매출액을 방송사업

매출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매출액을 포함, 이하 동일)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합병 등에 따른 회계처리)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의 합병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되는 사업자는 당해 연도초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② 사업자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분할(양도)법인은 분할(양도)기일까지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양도)되는 방송사업의 재무제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할(양도)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③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분할(양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라 재산상황을 제출한다.

제7조(계정의 구분) ①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시 계정별로 비교란에 차이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 상의 적절한 계정으로 표시 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선금금)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선금금과 제5장 방송프로그램 회계처리에 따른 결산일 현재 제작 또는 구입 중인 방송프로그램선금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9조(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투입될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방송 촬영에 필요한 필름, 테이프, 협찬물품 및 방송장비 수선용 부품 등과 유료방송사업자가 판매를 목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10조(유형자산의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방송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으로 구분하며,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설비 : 방송프로그램 · 광고 등의 제작 · 송출 · 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실물세트 · 의상 · 미술품 · 각종 소도구 등을 말한다.

2.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 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혹은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변환 재생하거나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선로설비 : 방송프로그램 혹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로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단말장치 :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인 컨버터와 셋톱박스 등으로 한다

6. 정보처리설비 : 제작 혹은 구입방송프로그램을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전원설비 :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8. 건설중인 자산 : 건설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방송통신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9. 기타 방송통신유형자산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사업 관련 설비자산으로 한다.

③ 일반지원자산은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영업을 위하여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로서 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개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비품 : 영업활동 및 판매관리활동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집기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한 차량운반구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한다.
7. 기타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1조(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권자산은 별도 구분한다.

1. 영업권 : 기업의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 영업권으로 한다.
2. 방송프로그램 : 방송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포함하며 취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제작방송프로그램(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 나. 구입방송프로그램
3.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기타무형자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배

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12조(매출액의 분류) ①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하고, 방송사업매출액은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며 관련 매출액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침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경우 수익 및 비용의 인식방법 및 시기는 지침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DMB’라 한다)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매출액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텔레비전 수신료로 한다.

2. 재송신매출액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시간방송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3.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제12조 제4항 제1호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을 말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제2호의 재송신매출액을 제외하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판매한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포함한다.

5.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 방송함에 따른 매출액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경영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는 지상파광고매출액과 이동멀티미디어사업 광고매출액,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7.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④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료방송수신료매출액 : 유료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유료 주문형비디오(이하 'VOD'라 한다)매출액,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 가.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 :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의 수신료매출액을 말한다.
    - 나. 유료채널수신료매출액 : 기본 채널 단위 묶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널 추가에 따라 채널마다 추가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채널 수신료매출액으로 한다.
    - 다. 유료VOD수신료매출액 : 유료VOD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 라. 기타수신료매출액 : 수신료 매출액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외한 기타수신료 매출액으로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서비스 매출액을 포함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송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4. 장치비매출액 : 방송수신 설비 설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및 가입자에게 단말장치를 대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5.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방송사업매출액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이하 동일)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에 방송프로그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포함, 이하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수신료분배 매출액을 말한다.
  2. 광고매출액 :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함에 따른 수익으로 직접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으로 한다.

3. 협찬매출액 :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 매출액으로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TV, DMB, 라디오별로 제작협찬(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으로 구분), 캠페인 협찬, 공익행사 협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4.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 자사의 모든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매출액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 판매를 포함한다.
  5. 방송시설임대매출액 :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차량운반구 등의 임대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6. 행사매출액 :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된 행사개최에 따른 매출액으로,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사의 매출액은 기타사업매출액으로 한다.
  7. 홈쇼핑방송매출액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매출액과 상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한다.
    - 가. 수수료매출액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을 방송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나. 상품 등 매출액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액으로 한다.
    -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액으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주석기재 한다.
  8.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한다.
- ⑥ 기타사업매출액은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기타사업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상의 전기통신사업매출액과 기타매출액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기통신사업 매출액 :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등 전기통신사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다.

2. 기타매출액 : 제1호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업 매출액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은 모바일앱매출액과 기타사업매출액으로 구분  
 한다.

제13조(영업비용의 분류) ① 영업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방영된 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  
 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  
 의 당기 무형자산상각액을 말한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된 구입방송프로그램으로  
 써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의 구입비용 및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  
 의 당기 무형자산 상각액을 말한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한다.

- ③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종업원과 임원의 급여 · 상여금 ·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으로써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만을 말한다.

2. 감가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경  
 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으로 한다.

4.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5. 세금과공과 :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한다.
- 나. 기타세금과공과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제외한 기타의 세금과공과로 한다.
- 6. 광고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게 광고판매 위탁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한다.
- 7. 지급수수료 : 사업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로 한다
- 8.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을 빌려 쓰고 지급한 사용료로 한다.
- 9. 교육훈련비 :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접비로 한다.
- 10. 기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 ④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1. 방송프로그램비용 : 지역 채널 운영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의 제1호 가목과 같다.
    -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의 제1호 나목과 같다.
    - 다. 방송프로그램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제공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가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실시간프로그램사용료와 무료 VOD 프로그램 사용료를 말한다.
      - (2) 유료채널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나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 (3) 유료VOD 프로그램사용료 : 제12조 제4항 제1호다목의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 (4) 재송신비용 :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대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 2. 기타 매출원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전송망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나. 위성사용료 :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기타 : 가목과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원가로 한다.

⑤ 유료방송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감가상각비 :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3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3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3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3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3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8. 판매촉진비 : 고객유치수수료, 고객유치수당, 홍보용품구입비 및 전단지제작비 등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수수료 : 제3항 제7호를 준용한다.

10. 지급임차료 : 제3항 제8호를 준용한다.

11. 교육훈련비 : 제3항 제9조를 준용한다.

12. 기타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가는 방송프로그램비용과 기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프로그램비용

가. 방송프로그램제작비 : 제2항제1호가목과 같다.

나. 방송프로그램구입비 : 제2항제1호나목과 같다.

2. 기타 : 방송프로그램비용 외 매출원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홈쇼핑송출수수료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홈쇼핑방송을 송출하고 지출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나. 전송망사용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전송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로 한다.

다. 위성사용료 :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 상품 등 매출원가 :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 등의 매출원가를 말한다.

마. 기타 : 제1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 포함되지 않는 매출원가로 한다.

⑦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판매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건비 :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

2. 감가상각비 : 제5항 제2호를 준용한다.

3. 무형자산상각비 : 제5항 제3호를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 제5항 제4호를 준용한다.

5. 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제5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한다.

나. 기타세금과공과 : 제5항 제5호 나목을 준용한다.

6. 광고대행수수료 : 제5항 제6호를 준용한다.

7. 광고선전비 : 제5항 제7호를 준용한다.

8. 지급수수료 : 제5항 제9호를 준용한다.

9. 지급임차료 : 제5항 제10호를 준용한다.

10. 교육훈련비 : 제5항 제11조를 준용한다.

11. 기타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관리비로 한다.

제14조(영업외손익의 구분) 사업자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영업외수익 : 보조금(현금 등 포함) 수익, 임대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각종

자산 처분이익 · 평가이익,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각종 금융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기타 충당부채환입액 및 잡이익 등으로 영업활동외 수익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각종 자산처분손실 · 평가손실,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 각종 금융비용(이자비용 등), 기부금, 기타 충당부채 전입액 및 잡손실 등 영업활동외 비용으로 한다.

제15조(결합판매매출액 분류) 방송사업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과 기타사업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결합판매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합판매 가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제 판매시 약관에 명시된 가격 및 할인율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상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제16조(권역별 회계) 둘 이상의 방송사업권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각각의 방송사업권역별로 본지점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분 경리하여 제출 한다. 다만, 구분 경리가 곤란한 재무상태표, 방송프로그램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경영자확인서,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비용은 본점이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매출액명세서, 매출원가명세서, 및 영업통계는 권역별로 제출한다.

제17조(제작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작(자체제작 및 외주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결산일 현재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2.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

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제작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18조(구입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구입(임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입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으로 처리한다. 구입 완료 시점이란 구입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을 말한다.
2.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 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3.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하여 매출원가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4. 결산일 현재 구입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자료의 제출시기 등)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자료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 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1항에 따른 회계자료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으로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자료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한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자료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상황의 공표 및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 록 4 > 해외방송사업자 회계제도 사례

### 제1절 요약

해외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규제가 존재하는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의 BBC, 일본의 NHN, 미국의 CB를 검토하였다.

영국의 BBC는 수신료 등 공적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익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간의 불공정한 상호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segment) 수익과 비용 내역을 분리하여 연차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그룹의 경우 별도의 수익명세서와 비용명세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디지털 미디어 등 서비스별로 수익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영국 이외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비유동자산과 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등 매우 정밀한 회계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일반계정과 수익사업 계정(유료인터넷사업계정 및 수탁사업계정)을 분리하여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회계정보와 수신료 징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유형별, 지역별, 월별, 연도별로 공표하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Paramount Global의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 방송사로 일반 기업이 공시하는 수준의 연차보고서(10-K)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방송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 제2절 영국 BBC 사례

### 1. 영국 BBC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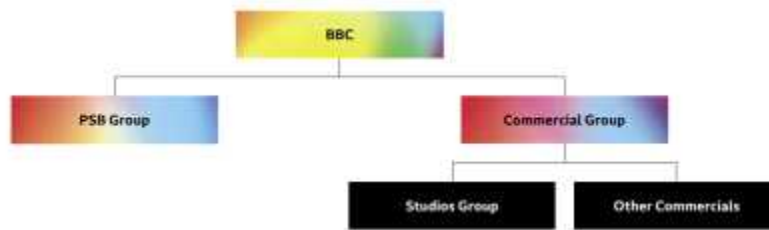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은 영국 국왕이 부여한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조직구조와 운영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칙허장은 BBC의 목표를 공공목적의 증진으로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1926년 처음 제정된 후 매 10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BBC의 지배구조는 BBC Trust와 BBC Executive Board(집행이사회)로 구분된다. BBC Trust는 BBC의 전략적 방향 제시,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 집행이사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BBC 집행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BBC Trust의 수장이 BBC 전체의 최고 경영자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칙허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BBC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와 약정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정훈과 권용재 2013).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영국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 Act 2003)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BBC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서비스(commercial service)나 광고 또는 스폰서 등을 위한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방송규제기관인 Ofcom이 발행한 The BBC Commercial and Trading Activities-Requirement and Guidance (2023)에 따르면, BBC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수행하면 안 되며, 모든 상업적 활동은 상업 자회사들(commercial subsidiary)을 통해서 수행하여야 하는데, BBC의 공적서비스(public service)와 공정한 거래조건(arm's length)을 준수하여야 한다(Part 2, A1). 즉, BBC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적서비스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활동간의 조직과 운영(subsidiary and operational separation)의 분리하여 별도의 이사회와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신료를 받는 BBC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BBC 그룹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PSB Group과 상업활동을 하는 Commercial Group으로 구분된다.

<표 A-1> BBC 그룹의 조직구조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표 A-2> BBC의 세부 운영조직 운영조직

PSB Group	Studios Group	Other commercials
<p>PSB is responsible for the BBC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provides a wide range of programmes to audiences across the UK on television, radio and digitally and across the world via its World Service provision. Examples of some of its well-known services are:</p>	<p>The Studios Group is the BBC'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 It creates, invests in, develops, produces, commercialises and distributes content which sits at the heart of the BBC schedule as well as across multiple platforms and around the world, delivering value back to the licence fee consumer through support for programme funding and cash dividends. Examples of some of its well-known brands are:</p>	<p>Aggregated for reporting purposes consisting of BBC Studioworks Limited and the non-trading parent companies. BBC Studioworks provides studio and post-production services to all major UK broadcasters and production companies.</p>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세부적으로, PSB Group은 BBC의 공적서비스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디지털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서비스는 BBC One, BBC News 등이 있다. 또한 Studio Group은 BBC의 콘텐츠 투자, 제작, 상업화 및 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 투자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부서에는 BBC Studioworks Ltd.와 기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Studioworks는 제작이후서비스(post-production service)를 영국의 주요한 방송사와 제작사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2년에는 기타 조직에 포함되어 있던 BBC Children's Production Limited가 Studio Group으로 이전되었다.

## 2. BBC의 재무제표 구조

BBC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보고를 하고 있다. 2022/2023 연결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룹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공시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는 공공부분의 수신료 수익과 기타수익(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A-3> BBC의 연결 손익계산서 (2022-2023)

Consolidated income statement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23

	Note	2023 £m	2022 £m
Licence fee income	B1	3,740	3,800
Other income	B1	1,985	1,530
<b>Total income</b>	B1	<b>5,725</b>	<b>5,330</b>
Total operating costs	B1	(5,957)	(5,231)
Share of results of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E7	12	25
<b>Group operating (deficit)/surplus</b>		<b>(220)</b>	<b>124</b>
Gains on disposal	C2	11	28
Other gains and losses	C3	(21)	(13)
Net financing income	C4	91	47
<b>(Deficit)/surplus before taxation</b>		<b>(139)</b>	<b>186</b>
Taxation	C5.1	19	20
<b>(Deficit)/surplus for the year</b>		<b>(120)</b>	<b>206</b>
<b>Attributable to:</b>			
BBC		(120)	202
Non-controlling interests		-	4
<b>(Deficit)/surplus for the year</b>		<b>(120)</b>	<b>206</b>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lt;표 A-4&gt; BBC의 연결 재무상태표 (2022-2023)

## Consolidated balance sheet

Note	31 March		
	2022 €m	2023 €m	
<b>Non-current assets</b>			
Intangible assets (including goodwill)	E2	406	42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E4	433	478
Right-of-use assets	F1	1,506	1,507
Investment properties	E5, F3	31	32
Interes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E7	174	210
Trade and other receivables	H1.2	223	229
Investments		6	4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G5.2	390	417
Deferred tax assets	C5.5	25	22
Pension assets	D6.1	695	1,241
		<b>3,089</b>	<b>4,560</b>
<b>Current assets</b>			
Programme-related assets and other inventories	E1	1,020	1,111
Trade and other receivables	H1.3	1,159	1,096
Contract assets	H1.1	31	3
Assets classified as held for sale	E8	34	0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G5.2	11	2
Current tax assets	C5.4	62	88
Investments (cash on long-term deposits)	G2	100	-
Cash and cash equivalents	G7	560	717
		<b>2,917</b>	<b>3,023</b>
<b>Current liabilities</b>			
Trade and other payables	H2.3	(1,153)	(1,087)
Contract liabilities	H2.1	(183)	(912)
Borrowings	G3.1	(8)	(12)
Obligations under leases	F2	(127)	(180)
Provisions	H4	(110)	(94)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G5.2	(14)	(0)
Current tax liabilities	C5.6	(7)	(14)
		<b>(1,602)</b>	<b>(1,643)</b>
<b>Non-current liabilities</b>			
Trade and other payables	H2.2	(70)	(44)
Contract liabilities	H2.1	(83)	(21)
Borrowings	G3.2	(170)	(170)
Obligations under leases	F2	(1,591)	(1,619)
Provisions	H4	(100)	(5)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G5.2	(491)	(589)
Deferred tax liabilities	C5.5	(31)	(28)
		<b>(2,536)</b>	<b>(2,526)</b>
<b>Net assets</b>			
		<b>2,668</b>	<b>3,414</b>
<b>Attributable to the BBC:</b>			
Operating reserve	U	2,617	3,398
Hedging reserve	U	2	(8)
Translation reserve	U	47	35
Other reserves	U	-	(13)
		<b>2,666</b>	<b>3,412</b>
Non-controlling interests		2	2
<b>Total capital and reserves</b>		<b>2,668</b>	<b>3,414</b>

The financial statements were approved by the Board and authorised for issue on 27 June 2023, and signed on their behalf by: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 3. BBC의 회계분리 구조

BBC는 수신료로 인한 공공부분의 경쟁우위가 상업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BC 조직과 회계를 분리하여 수익, 비용, 자산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수익 및 비용과 정합성을 보고하고 있다.

<표 A-5> BBC의 조직별 구분 손익계산서 (2022-2023)

Financial statements  
Notes to the accounts continued

B. The BBC's operations, income and expenditure continued  
B1 Income and operating results

2023	Notes	PSB Group £m	Studies Group £m	Other Commercial £m	Intra-group eliminations £m	Group £m
Licence fee income	B2	3,740	-	-	-	3,740
Total incom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B3.2	198	2,068	41	(431)	1,853
Grant income		98	-	-	-	98
Rental and associated income		27	1	-	(12)	26
Other income		6	1	1	-	8
Total other income		339	2,090	42	(486)	1,985
<b>Total income</b>	B5.1	<b>4,079</b>	<b>2,090</b>	<b>42</b>	<b>(486)</b>	<b>5,725</b>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B6	(156)	(275)	(6)	2	(435)
Other operating costs		(4,286)	(1,744)	(57)	559	(5,522)
Total operating costs	B7	(4,442)	(2,019)	(57)	561	(6,967)
Share of results of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B7	-	52	-	-	12
<b>Group operating (deficit)/surplus</b>		<b>(363)</b>	<b>83</b>	<b>(15)</b>	<b>75</b>	<b>(220)</b>
Gain on disposal	C2	2	9	-	-	11
Other gains and losses	C3	-	(200)	(7)	-	(217)
Operating segment result		(351)	72	(16)	75	(230)
Financing income	C4	-	-	-	-	151
Financing costs	C4	-	-	-	-	(68)
Net financing income	C4	-	-	-	-	83
<b>Deficit before taxation</b>		<b>(351)</b>	<b>72</b>	<b>(16)</b>	<b>75</b>	<b>(139)</b>
Taxation	C5.1	-	-	-	-	19
<b>Deficit for the year</b>		<b>(351)</b>	<b>72</b>	<b>(16)</b>	<b>75</b>	<b>(120)</b>

On 1 April 2022, BBC Children's Productions Limited transferred from Other Commercials to the Studies Group.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또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PSB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다. PSB 그룹의 경우 2022/2023년 수신료 수익 3,740백만 파운드, 제작수익 33백만 파운드를 포함하여 총 3,964백만 파운드의 수입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표 A-6> BBC의 PSB 그룹 수익보고서 (2022-2023)

B3.1 PSB Income

	2023			2022		
	External income £m	Intra-group income £m	Total income £m	External income £m	Intra-group income £m	Total income £m
Licence fee income	3,740	-	3,740	3,800	-	3,800
Content and format sales	7	11	18	8	10	18
Production income	33	6	39	32	8	40
Royalties	25	57	82	26	44	70
Advertising income	3	-	3	2	-	2
Consumer products	16	1	17	9	2	11
Other contract income	11	28	39	3	34	37
Total incom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95	103	198	80	98	178
Grant income	98	-	98	98	-	98
Rental and associated income	25	12	37	13	13	26
Other income	6	-	6	5	-	5
Total other income	129	12	141	116	13	129
<b>Total income</b>	<b>3,964</b>	<b>115</b>	<b>4,079</b>	<b>3,996</b>	<b>111</b>	<b>4,107</b>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또한, PSB 그룹의 지출비용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TV, 라디오, 온라인, 오케스트라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TV 프로그램 제작비의 경우 드라마, 뉴스 등 장르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BBC World Service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PSB 그룹 업무영역에 포함되므로 해당 서비스를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표 A-7> BBC의 PSB 그룹 비용보고서 (2022-2023)

PSB expenditure	2022/23 £m	2021/22 £m
News and Current Affairs	342	314
Factual and Learning	280	235
Arts and Music	39	31
Film and Drama	397	376
Entertainment and Comedy	244	214
Sport Production	99	94
Children's	89	90
Other television content spend	379	431
Television services by genre	1,869	1,785
Radio	498	477
BBC Online and Red Button	234	247
Content spend on services by platform	2,601	2,509
Orchestras and performing groups	31	25
S4C (service spend)	22	24
Development spend	72	58
BBC World Service grant	103	97
BBC World Service Operating Licence**	249	243
Other service spend	477	447
<b>Total content spend</b>	<b>3,078</b>	<b>2,956</b>
Distribution costs	197	185
Content and distribution support	469	395
General support	187	158
<b>Total service spend</b>	<b>3,931</b>	<b>3,694</b>
Licence fee collection costs	137	122
Other obligations (S4C)	89	75
Monitoring	6	4
PSB Group pension deficit reduction payment	75	50
Costs incurred by PSB to generate non-licence fee income	220	183
Restructuring costs	61	13
<b>Total PSB Group expenditure</b>	<b>4,519</b>	<b>4,141</b>
Items reported outside of operating expenditure**	(77)	(70)
<b>PSB Group expenditure</b>	<b>4,442</b>	<b>4,071</b>

\* £290 million was spent on the BBC World Service Operating Licence in 2022/23 (including content, distribution and general support costs) (2021/22: £271 million).  
 \*\* The BBC World Service Operating Licence includes distribution spend of £78 million (2021/22: £30 million).  
 \*\*\* In order to reflect the full cost of the PSB Group expenditure by service certain costs are included above which are reported outside of operating expenditure. For example, finance lease interest is included to reflect the full cost of property, although it is not included in the Group operating expenditure.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아울러, 비유동자산과 수익에 대해서는 UK, America, Australia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유동자산과 외부 수익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표 A-8> BBC의 지역별 비유동자산과 수익보고서 (2022-2023)

B4 Geographical location of non-current assets and income					
2023	PSB Group £m	Studio Group £m	Other Commercial £m	Intra-group eliminations £m	Group £m
<b>Non-current assets excluding deferred tax and financial instruments:</b>					
UK	2,309	487	325	144	3,265
America	10	152	-	-	162
Australia	-	10	-	-	10
Rest of world*	32	5	-	-	37
	<b>2,351</b>	<b>654</b>	<b>325</b>	<b>144</b>	<b>3,474</b>
Additions included in non-current assets and investments					
	76	298	11	-	386
<b>External income:</b>					
UK	4,055	914	42	(486)	4,525
America	12	710	-	-	722
Australia	2	85	-	-	87
Rest of world*	10	381	-	-	391
	<b>4,079</b>	<b>2,090</b>	<b>42</b>	<b>(486)</b>	<b>5,725</b>

(출처 : BBC Group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 4. 시사점

BBC는 수신료 등 공적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익서비스와 상업적 서비스간의 불공정한 상호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segment) 수익과 비용 내역을 분리하여 연차보고서에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다. 또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PSB 그룹의 경우 별도의 수익명세서와 비용명세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디지털 미디어 등 서비스별로 수익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영국 이외에 미국과 호주 등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비유동자산과 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BBC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PSB 조직에 대한 상세한 수익 및 비용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사업부문간 구분 회계정보 공시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상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조를 제공하지 않고 공정한 이전가격을 통해 내부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제3절 일본 NHK 사례

### 1. 일본 NHK 방송 개요

일본 방송산업은 기간방송인 NHK(일본방송협회)와 일반(상업)방송으로 구분된다. 일본은 2011년 방송법을 개정하여 NHK에 대한 업무, 감사, 방송 프로그램 편집, 수신료 및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NHK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광고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신, NHK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총괄원가 방식으로 수신료를 산정하고 있다.

NHK는 2004년 7월 프로그램 제작비 부정 지출사건으로 사회적 비판에 휩싸이자,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고, 재무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NHK는 업무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회계정보와 수신료 징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유형별, 지역별, 월별, 연도별로 공표하고 있다(정훈과 권용재 2013).

### 2. NHK 재무제표 분석

NHK는 방송법 제3장 제7절에 따라 재무 및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NHK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에 마감되며,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NHK는 매 사업연도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무대신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 내각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재무제표는 일정기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NHK는 재무보고서를 통해 전체 손익계산서와 세부사업별 손익계산서를 구분하여 공시

하고 있다. NHK는 업무에 관한 경리와 관련해서 총무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각각 특별한 계정을 설정해서 회계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여 하기 때문이다(방송법 제73조). 전체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① 일반계정, ② 유료인터넷활용업무계정, ③ 수탁업무계정 손익계산서가 분리되어 있다. 다만, 대차대조표는 협회 전체 단일 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있다. <표 A-9>에서와 같이 NHK는 경상사업 수지, 금융 수입과 비용을 포함한 경상사업 외 수지, 고정자산과 관련된 특별수지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경상사업수익은 6,917억엔 이었으며, 이중 수신료가 6,716억달러로 97.8%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사업비용 총 6,753억엔 중에서 국내방송비용 3,193억엔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여가 1,112억엔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다.

<표 A-9> NHK 전체 손익계산서 (2022-2023)

NHK 손익계산서		(단위 : 천엔)
(협회전체)	계정과목	2022/2023
<b>경상사업 수익총액</b> 697,275,991		
	1. 수신료 수익	681,645,607
	2. 교부금 수익	3,762,347
	3. 방송프로그램 유료전송 수입	5,469,350
	4. 부차 수익	5,236,461
	5. 수탁업무 수익 등	1,162,225
<b>경상사업 지출 총액</b> 678,621,908		
	1. 국내방송 비용	319,385,261
	2. 국제방송 비용	20,769,644
	3. 국내방송프로그램 전송비용	11,767,338
	4. 국제방송프로그램 전송비용	2,582,224
	5. 방송프로그램 유료전송비용	2,921,739
	6. 수탁업무 비용	113,453
	7. 수신료 수납 비용	41,715,409
	8. 수신 대책 비용	609,417
	9. 홍보비	5,851,711
	10. 조사연구비	7,039,473
	11. 급여	111,331,313
	12. 퇴직수당 / 복리후생비	49,555,346
	13. 공동관리비	17,722,138
	14. 감가상각비	78,158,142
	15. 미납수신료 결손상각비	9,099,293
<b>경상사업수지차금</b> 18,654,083		
	I. 경상사업 외 수익	7,074,913
	1. 금융수익	2,824,254
	2. 잡수익	4,250,658
	II. 경상사업 외 비용	172,899
	1. 채무비	172,899
<b>III. 경상사업 외 수지 차액</b> 6,902,014		
<b>경상수지 차액</b> 25,556,096		
	I. 특별수익	6,839,468
	1. 고정자산 매각수익	6,834,839
	2. 고정자산 수증수익	4,628
	II. 특별비용	3,810,778
	1. 고정자산 매각손실	5,589
	2. 고정자산 외 손실	1,734,809
	3. 기타특별 비용	2,070,378
<b>당기사업수지 차액</b> 28,584,786		
<b>당기사업수지 차금</b> 28,584,786		
	사업수지영여금	28,584,786

(출처 : 일본방송협회 2023)

NHK의 사업별 손익계산서는 ①일반계정, ②유료인터넷활용업무계정, ③수탁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계정의 경상사업수입이 6,917억엔으로 전체 99.2%를 차지고 있으며, 일반계정의 경상사업지출도 6,753억엔으로 전체 99.5%를 차지하고 있다.

<표 A-10> NHK 일반계정 손익계산서 (2022-2023)

NHK 손익계산서		(단위 : 천엔)
(일반계정)	계정과목	2022/2023
<b>경상사업 수입</b>		691,759,050
	1. 수신료 수익	681,645,607
	2. 교부금 수익	3,762,347
	3. 부차수입	6,351,096
<b>경상사업 지출</b>		675,383,149
	1. 국내방송 비용	319,385,261
	2. 국제방송 비용	20,769,644
	3. 국내방송프로그램 전송비용	11,767,338
	4. 국제방송프로그램 전송비용	2,582,224
	5. 수신료 수납 비용	41,715,409
	6. 수신 대책 비용	609,417
	9. 홍보비	5,823,819
	10. 조사연구비	7,039,473
	11. 급여	111,235,648
	12. 퇴직수당 / 복리후생비	49,517,057
	13. 공통관리비	17,681,079
	14. 감가상각비	78,157,479
	15. 미납수신료 결손상각비	9,099,293
<b>경상사업수지 차급</b>		16,375,901
	I. 경상사업 외 수익	7,074,907
	1. 금융수익	2,824,254
	2. 잡수익	4,250,658
	II. 경상사업 외 비용	172,899
	1. 재무비	172,899
	III. 경상사업 외 수지 차액	6,902,007
<b>경상수지 차급</b>		23,277,908
	I. 특별수익	6,839,468
	1. 고정자산 매각수익	6,834,839
	2. 고정자산 수증수익	4,628
	II. 특별비용	3,810,778
	1. 고정자산 매각손실	5,589
	2. 고정자산 외 손실	1,734,809
	3. 기타특별 비용	2,070,378
<b>당기사업수지 차급</b>		26,306,599
	당기사업수지 차급	26,306,599
	사업수지잉여금	26,306,599

(출처 : 일본방송협회 2023)

반면, 유료인터넷활용사업의 경우 경상사업수입이 54억엔으로 전체수입에 0.7%에 불과하며, 수탁사업의 경우도 수입이 11억엔으로 전체 수익의 0.16%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A-11> NHK 유료인터넷활용계정 손익계산서 (2022-2023)

**NHK 손익계산서**  
(유료인터넷활용업무계정) (단위 : 천엔)

계정과목	2022/2023	
<b>경상사업 수입</b>		5,469,350
1. 방송프로그램 유료전송 수입	5,469,350	
<b>경상사업 지출</b>		3,191,168
1. 방송프로그램 유료전송비용	2,986,171	
2. 홍보비	27,891	
3. 급여	95,665	
4. 퇴직수당 / 복리후생비	38,288	
5. 공통관리비	42,487	
6. 감가상각비	663	
<b>경상사업수지 차금</b>		2,278,182
I. 경상사업 외 수익		5
1. 잡수익	5	
III. 경상사업 외 수지 차액		5
<b>경상수지 차금</b>		2,278,187
<b>당기사업수지 차금</b>		2,278,187
당기사업수지 차금		2,278,187
사업수지잉여금	2,278,187	

(출처 : 일본방송협회 2023)

<표 A-12> NHK 수탁계정 손익계산서 (2022-2023)

**NHK 손익계산서**  
(수탁업무등계정) (단위 : 천엔)

계정과목	2022/2023	
<b>경상사업 수익총액</b>		1,162,225
1. 수탁업무등 수입	1,162,225	
<b>경상사업 지출 총액</b>		974,958
1. 수탁업무지출	974,958	
당기사업수지차금		187,266
<b>경상수지 차금</b>		2,278,187
<b>당기사업수지 차금</b>		2,278,187
당기사업수지 차금		2,278,187
이월결손금	2,278,187	

(출처 : 일본방송협회, 2023)

### 3. 시사점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전체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일반계정과 유료인터넷사업계정 및 수탁사업 계정을 분리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된



손익계산서의 작성 및 공시는 NHK가 수신료를 재원으로하는 공익방송사업과 수익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체 수익과 비용 중에서 일반계정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은 수신료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제공하는 NHK의 수익 및 비용구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제4절 미국 CBS 사례

### 1. 미국 CBS 방송 개요

CBS(Columbia Broadcasting Company)방송은 미국 3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사중에 한 곳이다. CBS방송은 1927년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1939년 TV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50년에 세계 최초로 컬러방송을 송출했다. 출판사와 잡지사, 영화제작사, 홈비디오와 비디오게임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2019년 CBS는 바이어컴(Viacom)을 인수 합병한 후 2022년 사명을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로 변경하였다. Paramount Global은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Direct-to-Consumer 사업부와 CBS가 포함된 TV Media 사업부 그리고, 영화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Filmed Entertainment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BS인 TV Media 사업부는 국내 및 해외 방송 네트워크와 TV Station, 국내 및 해외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TV Media사업부는 Paramount Global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Paramount Global은 현재 미국 Na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림 A-1> Paramount Global 사업구조



(출처 : Paramount Global Company Presentation, 2023)

## 2. 미국 CBS Annual Report 분석

CBS TV and Media 사업부는 Paramount Global의 하나의 사업부로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NASDAQ 상장기업인 Paramount Global은 매년 재무제표가 포함된 연차보고서(10-K)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는 Paramount Global의 전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사업별 매출과 손익이 포함되어 있다. Paramount Global은 TV Media, Direct-to-Consumer, Filmed Entertainment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에 보고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보고되고 있다(재무제표 주석 19번 Segment Reporting). TV 미디어 수익은 광고, 구독 및 라이선스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Direct-to-Consumer 수익은 광고와 구독 수입 그리고 Filmed Entertainment 수익은 광고, 극장, 라이선스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부간 내부거래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표 A-13> Paramount Global의 Segment Revenue

Year Ended December 31,	2022	2021	2020
<b>Revenues:</b>			
Advertising	\$ 9,350	\$ 10,105	\$ 9,062
Affiliate and subscription	8,180	8,413	8,037
Licensing and other	4,202	4,216	4,021
<b>TV Media</b>	<b>21,732</b>	<b>22,734</b>	<b>21,120</b>
Advertising	1,533	1,298	686
Subscription	3,371	2,029	1,129
<b>Direct-to-Consumer</b>	<b>4,904</b>	<b>3,327</b>	<b>1,815</b>
Advertising	23	18	18
Theatrical	1,223	241	180
Licensing and other	2,460	2,428	2,272
<b>Filmed Entertainment</b>	<b>3,706</b>	<b>2,687</b>	<b>2,470</b>
Eliminations	(188)	(162)	(120)
<b>Total Revenues</b>	<b>\$ 30,154</b>	<b>\$ 28,586</b>	<b>\$ 25,285</b>

(출처 : Paramount Global, Annual Report (10-K). 2023)

그러나, 사업부별 비용의 상세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사업부별 이익만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고객위치 기반으로 미국 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다.

〈표 A-14〉 Paramount Global의 Segment Income

Year Ended December 31,	2022	2021	2020
<b>Adjusted OIBDA:</b>			
TV Media	\$ 5,451	\$ 5,892	\$ 5,816
Direct-to-Consumer	(1,819)	(992)	(171)
Filmed Entertainment	272	207	158
Corporate/Eliminations	(470)	(491)	(485)
Stock-based compensation	(158)	(172)	(186)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405)	(390)	(430)
Restructuring and other corporate matters	(585)	(100)	(618)
Programming charges	—	—	(159)
Net gain on dispositions	56	2,343	214
<b>Operating income</b>	<b>2,342</b>	<b>6,297</b>	<b>4,139</b>
Interest expense	(931)	(986)	(1,031)
Interest income	108	53	60
Net gains (losses) from investments	(9)	47	206
Loss on extinguishment of debt	(120)	(128)	(126)
Other items, net	(124)	(77)	(101)
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before income taxes and equity in loss of investee companies	1,266	5,206	3,147
Provision for income taxes	(227)	(646)	(535)
Equity in loss of investee companies, net of tax	(204)	(91)	(28)
Net earnings from continuing operations	835	4,469	2,584
Net earning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net of tax	379	162	117
Net earnings (Paramount and noncontrolling interests)	1,214	4,631	2,701
Net earnings attributable to noncontrolling interests	(110)	(88)	(279)
Net earnings attributable to Paramount	\$ 1,104	\$ 4,543	\$ 2,422

(출처 : Paramount Global, Annual Report (10-K). 2023)

〈표 A-15〉 Paramount Global의 Geographical Revenue

Year Ended December 31,	2022	2021	2020
<b>Revenues: <sup>(1)</sup></b>			
United States	\$ 24,412	\$ 23,320	\$ 20,690
International	5,742	5,266	4,595
<b>Total Revenues</b>	<b>\$ 30,154</b>	<b>\$ 28,586</b>	<b>\$ 25,285</b>

(출처 : Paramount Global, Annual Report (10-K). 2023)

### 3. 시사점

미국 CBS 방송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Paramount Global의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 방송사이다. Paramount Global은 NASDAQ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미국 SEC 규정에 따라 연차보고서(10-K)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미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에 주요 사업부에 대한 구분회계 공시(segment reporting)를 통해 CBS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

시하고 있다. CBS가 포함된 TV Media 사업부 수익은 광고, 구독, 라이선스 등 원천별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비용은 별도의 세부계정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사업부별 영업이익만 공시하고 있어 비용은 총액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부간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매출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CBS방송은 회계정보를 규제목적으로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통해 사업별로 구분된 수익 및 이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다.



방송융합정책연구  
KCC-2023-69

##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